

2024회계연도 가평군 결산검사의견서

수신: 가평군수

2025. 4. 22.

2024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2025년 4월 3일 ~ 4월 22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최원중(대표위원)
 - 검사위원: 유근웅(위원)
 - 검사위원: 지병수(위원)
 - 검사위원: 신현배(위원)
 - 검사위원: 홍인수(위원)

가평군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의견서

가평군수 귀하

2025년 4월 22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가평군 의회로부터 가평군 2024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5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20일간)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4회계연도 가평군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가평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가평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과 세출결산(계속비이월)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서(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최원중
위원	유근용
위원	지병수
위원	신현배
위원	홍인수

목 차

I .	결산검사 경과	1
------------	----------------	----------

II .	결산검사 총괄현황	2
-------------	------------------	----------

①	가평균 재정여건	2
---	----------------	---

②	세입·세출 결산	5
---	----------------	---

③	기금의 결산	16
---	--------------	----

④	재무제표의 결산	17
---	----------------	----

⑤	성과보고서	19
---	-------------	----

⑥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20
---	--------------------	----

III .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22
--------------	-----------------------	-----------

IV .	결산검사 우수사례	53
-------------	------------------	-----------

V .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54
------------	--------------------------------	-----------

I.

결산검사 경과

1. 결산검사의 방향

-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행정안전부)을 근거로 작성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 2024회계연도의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의회승인으로 확정된 세출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금액 내에서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결산검사 기간: 2025. 4. 3. ~ 4. 22.(20일간)

3. 결산검사 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표위원	최 원 중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결산	
위 원	유 근 응		
위 원	지 병 수		
위 원	신 현 배		
위 원	홍 인 수		

4. 결산검사 사항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결산

5. 결산검사 진행

- 세입·세출결산서 위주로 검사
-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원칙으로 제·장부 및 지출증빙서 등을 열람
- 결산검사 중 의문사항은 서류제출 요구
- 쟁점사항은 위원의 협의를 거쳐 조정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가평균 재정여건

1. 재정여건

- 최근 5년간의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의 수입지출 포함)의 세입·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세 입	850,459,695	1,005,289,038	955,239,005	961,495,856	947,991,111
	세 출	588,977,761	725,237,062	656,781,993	653,881,168	663,839,037
	결산상잉여금	261,481,934	280,051,976	298,457,012	307,614,688	284,152,074
일반회계	세 입	673,377,880	746,640,363	687,580,036	695,182,891	701,262,145
	세 출	500,851,034	627,701,848	559,425,896	543,642,299	568,253,552
	결산상잉여금	172,526,846	118,938,515	128,154,140	151,540,592	133,008,593
특별회계	세 입	101,808,504	109,516,175	108,090,356	107,717,007	111,194,384
	세 출	74,314,921	87,723,752	82,128,190	79,108,337	86,579,045
	결산상잉여금	27,493,583	21,792,423	25,962,166	28,608,670	24,615,339
기 금	세 입	75,273,311	149,132,500	159,568,613	158,595,958	135,534,582
	세 출	13,811,806	9,811,462	15,227,907	31,130,532	9,006,440
	결산상잉여금	61,461,505	139,321,038	144,340,706	127,465,426	126,528,142

- 2024회계연도 재정규모는 961,495,856천원으로 전년대비 13,504,745천원이 감소하였다. 2024회계연도의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10,403천원이다.

※ 기금의 결산상잉여금은 예탁금(여유자금을 예탁하는 내부거래) 40,143,934천원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예탁금을 제외한 결산상잉여금은 86,384,208천원임.

※ 현년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 즉,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의 전출금 및 전입금 등 회계 간의 내부거래와 공채발행, 차입, 채무상환, 전년도 이월금이나 다음해 이월금을 차감한 순계개념의 세입과 세출의 차를 의미한다.

○ 가평균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합 계	11,603,970	8,960,790	-	-	-	
일 반 회 계	11,603,970	8,960,790	-	-	-	
공 채	-	-	-	-	-	
차 입 금	11,603,970	8,960,790	-	-	-	
채 무 부 담 행 위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가평균 채무는 0원이다. 2024회계연도 채무를 주민수로 나눈 ‘주민 1인당 채무’ 는 0원이다.

2. 재정건전성

○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지표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이 주의단계나 심각단계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 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판 단 기 준		가 평균 지 표
			주의	심각(위기)	
채무관리	① 예산대비 채무비율	$\frac{\text{지방채무잔액}}{\text{총예산}}$	25% 초과	40% 초과	0.00%
	② 채무상환 부담률	$\frac{\text{지방채무상환액}}{\text{일반재원}}$	12% 초과	17% 초과	0.00%
세입관리	③ 지방세 징수액 현황	$\frac{\text{해당연도 월별누적징수액}}{\text{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80% 미만	70% 미만	94.4%
자금관리	④ 금고잔액 현황	$\frac{\text{해당연도분기별금고총잔액}}{\text{최근 3년분기별평균금고총잔액}}$	20% 미만	10% 미만	96.6%
공 기 업	⑤ 공기업 부채비율	$\frac{\text{부 채}}{\text{순 자산}}$	400% 초과	600% 초과	0.47%
	⑥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상수도) 0.9% (하수도) 0.04%

- 가평균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기준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0.00%, 채무상환비 비율은 0.00%, 지방세 징수액 현황은 94.4%, 금고잔액 현황 96.60%, 공기업 부채비율은 0.28%로서 가평균은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2024년도 본예산 기준)

$$- \text{재정자립도} = 18.29\% \left[\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right]$$

- ※ - 지방세: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 과년도 수입

☞ 재정자립도는 동종 자치단체(전국 군 평균 17.86%)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text{재정자주도} = 58.90\% \left[\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right]$$

- ※ 자체수입: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주재원: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조금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동종 자치단체(전국 군 평균 55.22%)보다 재정자주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잉여금(A-B)	비고
합 계	814,595,219	812,456,529	654,832,597	157,623,932	
일반회계	698,844,127	701,262,145	568,253,552	133,008,593	
특별회계	115,751,092	111,194,384	86,579,045	24,615,339	
공기업특별회계	83,054,283	78,792,464	59,781,051	19,011,413	
기타특별회계	32,696,809	32,401,720	26,797,994	5,603,926	

구 분	현년도 채무상환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비고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	41,744,556	17,887,176 (372,325)	49,801,773 (3,671,100)	6,883,375	41,790,484	
일반회계	-	34,170,570	15,663,175 (372,325)	45,954,681	6,570,400	31,133,199	
특별회계	-	7,573,986	2,224,001	3,847,092 (3,671,100)	312,975	10,657,285	
공기업특별회계	-	2,833,862	2,028,331	3,847,092 (3,671,100)	7,115	10,295,012	
기타특별회계	-	4,740,124	195,670	-	305,860	362,273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표시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12,456,529천원으로 예산현액 814,595,219천원보다 2,138,690천원이 덜 수납되었다.
-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0%인 654,832,597천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57,623,932천원이다. 이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 41,744,556천원, 사고이월 17,887,176천원(자금없는 이월 372,325천원), 계속비이월 49,801,773천원(자금없는 이월 3,671,100천원), 보조금집행잔액 6,883,375천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1,790,484천원이다.

※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현년도 채무상환액은 없다.

- 명시·사고 및 계속비 이월과 자금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1) 세입결산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 예산현액 791,961,82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02,899,898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4%이며, 징수결정액 816,648,284천원대비 수납액 비율은 98.3%이다.

【세입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율(%)	
						다/가	다/나
합 계	814,595,219	828,156,211	812,456,529	2,212,117	13,487,564	99.7	98.1
전년도	791,961,829	816,648,284	802,899,898	1,956,948	11,791,437	101.4	98.3
일반회계	698,844,127	715,850,468	701,262,145	2,204,961	12,383,361	100.3	98.0
전년도	683,099,839	707,299,926	695,182,891	1,956,948	10,160,086	101.8	98.3
특별회계	115,751,092	112,305,743	111,194,384	7,156	1,104,203	97.0	98.8
전년도	108,861,990	109,348,358	107,717,007	-	1,631,351	98.9	98.5

- 실제수납액은 전년대비 9,556,631천원(1.2%) 증가하였고, 정리보류액은 전년대비 255,169천원(13%)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696,127천원(14.3%) 증가하였다.

2) 세출결산

-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예산현액은 791,961,829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6,236,999천원을 합한 금액이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인 622,750,636천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의 13%인 113,476,929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인 45,832,061천원이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회계구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비고
합 계	814,595,219	654,832,597	113,104,604	39,402,318	
전년도	791,961,829	622,750,636	115,802,660	45,832,061	
일반회계	698,844,127	568,253,552	95,788,425	27,859,425	
전년도	683,099,839	543,642,299	102,711,552	29,541,794	
특별회계	115,751,092	86,579,045	17,316,179	11,542,893	
전년도	108,861,990	79,108,337	13,091,108	16,290,267	

2. 일반회계

1) 세입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다음과 같고, 세입결산액과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일치하였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과 목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결손처분 등)	미수납액 (다음연도이월액)	비중 (수납액 기준 %)
합 계	698,844,127	715,850,468	701,262,145	2,204,961	12,383,361	100
전년도	683,099,839	707,299,925	695,182,891	1,956,948	10,160,085	100
지방세수입	65,820,770	77,041,713	66,916,995	1,289,398	8,835,320	8.2
전년도	70,800,000	79,322,723	71,156,785	1,025,298	7,140,640	10.2
세외수입	30,022,849	37,156,175	32,692,570	915,563	3,548,041	6.1
전년도	27,998,731	32,651,896	28,701,073	931,650	3,019,172	4.1
지방교부세	150,747,274	150,153,521	150,153,521	-	-	18.5
전년도	163,232,981	170,524,156	170,524,155	-	-	24.5
조정교부금등	103,858,000	103,858,000	103,858,000	-	-	12.5
전년도	93,863,000	97,153,367	97,153,367	-	-	13.9
보조금	182,983,091	182,114,902	182,114,902	-	-	26.6
전년도	168,022,106	167,982,332	167,982,332	-	-	24.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5,412,143	165,526,157	165,526,157	-	-	27.8
전년도	159,183,021	159,665,451	159,665,179	-	273	23.0
결산확인액	698,844,127	715,850,468	701,262,145	2,204,961	12,383,361	
차액	-	-	-	-	-	

- 예산현액은 698,844,127천원으로 전년대비 15,744,288천원(2.3%)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은 707,299,925천원으로 전년대비 8,550,543천원(1.2%) 증가하였다.
-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6,079,254천원 많은 701,262,145천원(0.8% 증가)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대비 감소한 주요 항목은 지방교부세 20,370,634천원(△13.5%), 지방세수입 4,239,790천원(△6.3%) 등이다.
- 재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실제수납액 701,262,145천원 중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보조금 26.6%, 지방교부세 18.5%, 조정교부금등 12.5%, 지방세수입 8.2%, 세외수입 6.1%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 정리보류액은 2,204,961천원으로 주된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 1,231,916천원(55.8%), 평가액 부족 911,717천원(41.3%) 등이다.

○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결산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698,844,127	715,850,468	701,262,145	2,204,961	12,383,361
지방세	소 계	65,820,770	77,041,713	66,916,995	1,289,398	8,835,320
	주민세	1,618,930	1,656,007	1,579,155	-	76,853
	재산세	25,200,000	26,967,060	25,644,322	-	1,322,738
	자동차세	7,500,000	8,387,157	7,520,218	153	866,786
	담배소비세	7,400,000	7,205,930	7,205,930	-	-
	지방소비세	8,600,000	9,075,609	9,075,609	-	-
	지방소득세	12,901,840	15,786,016	13,150,336	-	2,635,680
	지난년도수입	2,600,000	7,963,933	2,741,424	1,289,245	3,933,263
세외수입	소 계	30,022,849	37,156,175	32,692,570	915,563	3,548,041
	경상적세외수입	17,266,621	18,491,812	18,402,056	-	89,755
	재산임대수입	609,565	792,847	756,436	-	36,411
	사용료수입	5,910,607	6,182,452	6,130,422	-	52,030
	수수료수입	3,536,326	3,424,756	3,424,298	-	458
	사업수입	66,600	110,227	110,227	-	-
	징수교부금수입	2,789,342	3,238,579	3,238,579	-	-
	이자수입	4,354,181	4,742,951	4,742,094	-	857
	임시적세외수입	11,327,448	15,805,058	12,958,351	915,563	1,931,144
	재산매각수입	722,656	814,889	814,889	-	-
	보조금반환수입	3,064,257	4,071,126	4,050,188	-	20,938
	기타수입	6,840,535	7,935,259	7,466,432	-	468,826
	지난년도수입	700,000	2,983,784	626,842	915,563	1,441,379
	지방행정체제·부과금	1,428,780	2,859,305	1,332,163	-	1,527,142
	과징금	45,490	272,877	46,820	-	226,057
	이행강제금	405,000	522,320	250,503	-	271,818
	변상금	23,116	52,228	47,745	-	4,484
	과태료	424,026	840,352	468,241	-	372,111
	환수금	148	1,251	1,251	-	-
	부담금	530,000	1,163,676	512,004	-	651,672
벌칙금	1,000	6,600	5,600	-	1,000	
지방교부세	150,747,274	150,153,521	150,153,521	-	-	
조정교부금 등	103,858,000	103,858,000	103,858,000	-	-	
보조금	182,983,091	182,114,902	182,114,902	-	-	
국비보조금	115,378,010	114,517,007	114,517,007	-	-	
도비보조금	67,605,081	67,597,895	67,597,895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5,412,143	165,526,157	165,526,157	-	-	

○ 지난년도 대비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결산액의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수납액) 증감현황】

(단위: 천원)

세목별	연도별	2024년	2023년	증감액	증감율 (%)	비고
합	계	701,262,144	695,182,891	6,079,253	0.87	
지방세	계	66,916,994	71,156,785	-4,239,791	△6.34	
	주민세	1,579,155	1,571,304	7,851	0.50	
	재산세	25,644,322	25,721,795	-77,473	△0.30	
	자동차세	7,520,218	7,491,988	28,230	0.38	
	담배소비세	7,205,930	7,304,070	-98,140	△1.36	
	지방소비세	9,075,609	8,417,630	657,979	7.25	
	지방소득세	13,150,336	19,161,442	-6,011,106	△45.71	
	지난년도수입	2,741,424	1,488,556	1,252,868	45.70	
세외수입	계	32,692,570	28,701,073	3,991,497	12.21	
	경상적세외수입	18,402,056	17,231,685	1,170,371	6.36	
	임시적세외수입	12,958,351	10,218,439	2,739,912	21.1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32,163	1,250,949	81,214	6.10	
지방교부세		150,153,521	170,524,156	-20,370,635	△13.57	
조정교부금등		103,858,000	97,153,367	6,704,633	6.46	
보조금	계	182,114,902	167,982,332	14,132,570	7.76	
	국비보조금	114,517,007	110,338,577	4,178,430	3.65	
	도비보조금	67,597,895	57,643,755	9,954,140	14.7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5,526,157	159,665,178	5,860,979	3.54	

○ 지방세는 전년 대비 42억원(5.96%) 감소하였는데 재산세, 자동차세 등 대부분의 세목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급감으로 인한 양도소득분 및 부동산 경기침체와 세율 감소로 인한 법인소득분이 감소하여 수납액이 60억원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지난년도 수입은 과오납환급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환급금 감소와 이월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징수액이 12억원 증가하였고 지방소비세는 높은 물가 인상이 반영되어 6억원 증가하였다.

○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0억원(13.9%) 증가하였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입장료 수입 등 사용료 수입이 5억원 감소하였으나 고금리 시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이 17억원 증가하였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4억원 증가하였고 보조금 반환수입이 18억원 증가하였다. 부과금의 경우 과태료 수입이 1억원 증가하였다.

- 세입결산서의 수납액과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한 결과 79,339천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지방세를 현물(토지)로 징수한 것에 대한 차액이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구 분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액	차 액	사 유
일 반 회 계	701,262,145	701,182,806	79,339	지방세 현물(토지) 징수 ※ 공유재산 증가

2) 세출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고, 세출 결산액과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일치하였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율% (나/가)	비고
2024년	596,132,575	699,844,127	568,253,552	96,160,750	27,859,425	81.2	
2023년	606,862,840	683,099,839	543,642,299	102,711,552	29,541,794	79.6	
증감액	-10,730,265	16,744,288	24,611,253	-6,550,802	-1,682,369	-	
%	△1.8	2.4	4.3	△6.8	△6.0	1.9	
결산확인액	596,132,575	699,844,127	568,253,552	96,160,750	27,859,425	81.2	
차 액	-	-	-	-	-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96,132,575천원에 전년도이월액 103,711,552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99,844,127천원이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1.3%인 568,253,552천원이고 96,160,750천원(예산현액대비 13.7%)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859,425천원(예산현액대비 3.9%)으로 주로 지출잔액, 보조금정산잔액, 예비비 등으로 전년대비 1,682,369천원(6.0%) 감소하였다.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과 금고출납계산서와의 차액은 없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액	차 액	비고
일 반 회 계	568,253,552	568,253,552	-	

○ 일반회계 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이월내역】

(단위: 천원, 건, %)

구 분	2024년(A)		2023년(B)		차 액(C=A-B)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증감율
합 계	231	96,160,750	222	102,711,552	9	-6,550,802	△6.8
명 시 이 월	85	34,170,570	93	37,862,747	-8	-3,692,177	△10.8
사 고 이 월	98	16,035,500	81	10,782,016	17	5,253,484	32.8
계속비이월	48	45,954,680	48	54,066,789	-	-8,112,109	△17.7

- 총 이월사업비는 231건 96,160,750천원으로 명시이월 85건 34,170,570천원, 사고이월 98건 16,035,500천원, 계속비이월 48건 45,954,681천원으로 전년대비 6.8% 감소하였다.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지출액	전년대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점유율		증감액	증감율
합 계	699,844,127	568,253,552	81.2	100	543,642,299	24,611,253	4.5
일 반 공 공 행 정	42,856,438	39,953,379	93.2	7.0	44,745,619	-4,917,378	-9.9
공공질서 및 안전	12,488,817	9,066,510	72.6	1.6	9,104,633	-1,104,415	-10.8
교 육	23,161,493	12,204,901	52.6	2.1	6,331,491	-404,770	-6.0
문 화 및 관 광	89,396,099	63,441,058	70.9	11.2	47,591,914	-11,924,555	-20.0
환 경 보 호	58,711,043	46,366,645	78.9	8.2	42,184,237	-783,681	-1.8
사 회 복 지	188,496,391	167,979,118	89.1	29.6	160,779,682	14,233,500	9.7
보 건	8,292,381	7,857,196	94.7	1.4	8,555,046	-289,811	-3.3
농 립 해 양 수 산	69,526,654	56,903,722	81.8	10.0	60,698,964	2,546,397	4.4
산 업 · 중 소 기업 및 예 처	14,657,667	12,483,798	85.1	2.2	10,781,405	209,556	2.0
수 송 및 교 통	39,707,823	29,173,515	73.4	5.1	31,886,804	-8,566,337	-21.2
국 토 및 지 역 개 발	56,962,073	36,626,727	64.3	6.4	46,262,806	-8,641,588	-15.7
예 비 비	4,497,219	-	0.0	0.0	-	-	0
기 타	90,090,031	86,196,983	95.6	15.2	74,719,698	3,859,485	5.4

- 주요 지출분야는 사회복지 167,979,118천원(29.6%), 기타 86,196,983천원(15.2%), 문화 및 관광 63,441,058천원(11.2%) 등이며, 전년대비 증가율이 큰 분야는 사회복지(9.7%), 기타(5.4%), 농림해양수산(4.4%) 등이다.

3.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결산

1) 세입

-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세입 결산액은 다음과 같고, 세입 결산액과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일치하였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	미수납액
합	계	115,751,092	112,305,743	111,194,384	7,156	1,104,203
	전 년 도	108,861,990	109,348,358	107,717,007	-	1,631,351
공	소 계 (2)	83,054,283	79,354,126	78,792,464	-	561,663
	전 년 도	78,991,950	81,079,672	79,896,342	-	1,183,329
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558,092	26,107,070	25,817,232	-	289,838
	전 년 도	35,378,494	36,266,511	35,611,709	-	654,802
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6,496,191	53,247,056	52,975,232	-	271,825
	전 년 도	43,613,456	44,813,161	44,284,633	-	528,527
기	소 계 (4)	32,696,809	32,951,616	32,401,920	7,156	542,540
	전 년 도	29,870,040	28,268,686	27,820,665	-	448,022
의	료 기 금	1,238,533	1,352,749	1,240,611	7,085	105,053
	전 년 도	1,197,095	1,234,664	1,208,470	-	26,195
발	전 소 주 변 지 역	972,275	974,079	974,079	-	-
	전 년 도	918,514	793,487	793,487	-	-
주	차 장	9,217,761	9,322,428	8,884,870	71	437,487
	전 년 도	9,070,107	7,544,054	7,122,227	-	421,827
타	수 질 개 선	21,268,240	21,302,359	21,302,359	-	-
	전 년 도	18,684,324	18,696,481	18,696,481	-	-
결 산 확 인 액		115,751,092	112,305,743	111,194,384	7,156	1,104,203
차 액		-	-	-	-	-

-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6.1%인 111,194,384천원으로 전년대비 3,477,377천원(0.3%)이 증가하였다.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527,148천원(47.7%)이 감소한 1,104,203천원으로 미수납의 주요원인은 상·하수도요금, 불법주정차과태료의 미수납액으로 납세자의 납세태만 등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 세입결산서의 수납액과 금고출납계산서를 대사한 결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액 830,337천원이 발생하였다.

- 그 원인으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출납사무 완결기한(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에서 당해연도 12월에 수납되어 가평군 금고에 미입금된 당해연도 세입에 대한 차액이 각각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72,071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58,266천원이 발생하였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의 대사】

(단위:천원)

구 분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 액	차 액	사 유
합 계	111,194,384	110,364,047	830,337	
공기업특별회계	78,792,464	77,962,127	830,337	
상수도사업 특별 회 계	25,817,232	25,345,161	472,071	· 타 금융기관 수납세입 2024년 회계마감 후 금고 입금액: 472,071천원
하수도사업 특별 회 계	52,975,232	52,616,966	358,266	· 타 금융기관 수납세입 2024년 회계마감 후 금고 입금액: 358,266천원
기타특별회계	32,401,920	32,401,920	-	

2) 세출

-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세출결산액은 다음과 같고, 세출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일치하였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보조금반납포함)
합	계	115,751,092	86,579,045	17,316,179	11,858,868
	전 년 도	108,861,990	79,108,338	13,091,108	16,662,544
공	소 계 (2)	83,054,283	59,781,051	12,380,385	10,892,846
	전 년 도	78,991,950	56,301,688	6,920,774	15,769,488
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558,092	17,320,300	4,224,573	5,013,219
	전 년 도	35,378,494	21,473,886	4,187,344	9,717,264
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6,496,191	42,460,751	8,155,812	5,879,627
	전 년 도	43,613,456	34,827,802	2,733,430	6,052,224
기	소 계 (4)	32,696,809	26,797,994	4,935,794	963,022
	전 년 도	29,870,040	22,806,650	6,170,334	893,056
의	료 기 금	1,258,533	1,199,770	-	38,763
	전 년 도	1,197,095	1,138,491	-	58,604
발	전 소 주 변 지 역	972,275	845,741	-	126,533
	전 년 도	918,514	534,340	166,800	217,374
주	차 장	9,217,761	6,738,663	2,104,389	374,709
	전 년 도	9,070,107	4,587,579	4,313,415	169,113
수	질 개 선	21,268,240	18,013,819	2,831,405	423,016
	전 년 도	18,684,324	16,546,240	1,690,119	447,965
타	결 산 확 인 액	115,751,092	86,579,045	17,316,179	11,858,868
차	액	-	-	-	-

- 2024년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5,751,082천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4.8%인 86,579,045천원이 지출되었다.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59,781,051천원(예산현액대비 72.0%)을 지출하였고, 12,380,385천원(예산현액대비 14.9%)은 이월하였으며, 10,892,846천원(예산현액대비 13.1%)을 불용하였다.
-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26,797,994천원(예산현액대비 82.0%)을 지출하였고, 4,935,794천원(예산현액대비 15.1%)은 이월하였으며, 963,021천원(예산현액대비 2.9%)을 불용하였다.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과 금고출납계산서와의 차액은 없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비 고
특 별 회 계	86,579,045	86,579,045	-	
공 기 업 특 별 회 계	59,781,051	59,781,051	-	
기 타 특 별 회 계	26,797,994	26,797,994	-	

○ 특별회계의 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특별회계 이월내역】

(단위: 천원, 건, %)

구 분	2024년(A)		2023년(B)		차 액(C=A-B)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증감율
합 계	19	17,316,179	18	13,091,108	1	4,225,071	32.3
명 시 이 월	7	7,573,986	10	9,068,976	-3	-1,494,990	-16.5
사 고 이 월	9	2,224,001	7	3,345,637	2	-1,121,636	-33.5
계 속 비 이 월	3	7,518,192	1	676,495	2	6,841,697	1,011.3

- 총 이월사업비는 19건 17,316,179천원으로 명시이월 7건 7,573,986천원, 사고이월 9건 2,224,001천원, 계속비이월 3건 7,518,192천원으로 전년대비 32.3% 증가하였다.

4. 예비비의 결산

○ 2024회계연도 예비비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일반회계)	805,419	793,333	9,262	2,824
안전재난과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44,671	44,671	-
문화체육과	향토문화재 보수 및 정비 (801-01 일반예비비)	3,737	3,737	-
	향토문화재 보수 및 정비 (801-02 재난목적예비비)	12,760	11,994	-
건설과	농어촌도로(상102호선) 확포장공사	200,000	200,000	-
	도로정비	150,000	143,369	6,609
	도로정비	100,000	97,347	2,653
도시과	도시재생사업	22,000	19,964	-
교통과	GTX-B노선 가평연장	10,000	10,000	-
허가민원과	산림민원관리	262,251	262,251	-

- 2024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개 사업 805,419천원으로 손실보상비,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초과 지출 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

③ 기금의 결산

○ 2024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조성액(A+B)
		증감액(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127,465,427	-937,286	8,069,155	9,006,440	126,528,14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0,130,099	-3,201,695	4,757,484	7,959,179	86,928,40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01,899	16,962	16,962	-	718,861
가평군고향사랑기금	112,141	88,867	153,973	65,106	201,008
재난관리기금	3,276,944	503,246	780,822	277,576	3,780,190
청사건립기금	6,047,248	1,058,911	1,058,911	-	7,106,159
가평군자활기금	613,620	10,258	10,858	600	623,878
문화예술발전기금	1,603,734	-7,948	29,152	37,100	1,595,786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425,488	50,743	207,772	157,028	476,231
옥외광고발전기금	577,124	97,553	125,837	28,284	674,677
식품진흥기금	121,267	9,231	70,900	61,669	130,499
가평군장학기금	23,855,863	436,586	856,484	419,898	24,292,449

※ 옥외광고정비기금 명칭 변경(“옥외광고발전기금” 명칭변경)

- 2024회계연도말 가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개로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 127,465,427천원에 해당연도 조성액 8,069,155천원을 더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사용한 금액 9,006,440천원을 공제한 126,528,142천원이다.

○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50,745,207	46,606,215	139,321,039	144,944,159	127,465,472	20.2
해당연도 조성액	24,528,104	102,526,285	20,247,574	13,651,800	8,069,155	△19.9
해당연도 사용액	13,811,806	9,811,461	15,227,907	31,130,532	9,006,440	△8.2
해당연도말 조성액	61,461,505	139,321,039	144,340,706	127,465,472	126,528,142	15.5

4 재무제표의 결산

○ 가평군의 2024회계연도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3년	전년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667,560	2,599,639	67,921	2.61
I. 유 동 자 산	263,568	289,164	-25,596	△8.85
II. 투 자 자 산	4,523	4,104	419	10.21
III. 일 반 유 형 자 산	154,983	154,895	88	0.06
IV. 주 민 편 의 시 설	549,903	506,931	42,972	8.48
V. 사 회 기 반 시 설	1,685,872	1,636,047	49,825	3.05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8,711	8,498	213	2.51
부 채	20,488	19,876	612	3.07
I. 유 동 부 채	10,482	10,739	-257	-2.39
II. 장 기 차 입 부 채	-	-	-	-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10,006	9,137	869	9.52
순 자 산	2,647,072	2,579,763	67,309	2.61
I. 고 정 순 자 산	2,395,059	2,302,899	92,160	4.00
II. 특 정 순 자 산	47,218	43,937	3,281	7.47
III. 일 반 순 자 산	204,795	232,927	-28,132	△12.08

- 2024회계연도말 가평군의 자산은 2조6,675억원으로 전년도 2조5,996억원 보다 679억원(2.61%) 증가하였다.

이는 기타비유동자산이 2억원(2.51%) 증가하였고, 투자자산 4억원(10.21%), 일반유형자산 8억원(0.06%), 주민편의시설 429억원(8.48%), 사회기반시설 498억원(3.05%)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부채는 204억원으로 전년대비 6억원(3.07%)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타비유동부채가 8억원(9.52%) 증가하였고 유동부채 2억원(2.39%)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3년	전년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사업순원가 (가-나)	212,936	213,153	△217	△0.1
가. 사업총원가	417,344	395,301	22,043	5.58
나. 사업수익	204,408	182,148	22,260	12.2
II. 관리운영비	88,373	82,124	6,249	7.6
III. 비배분비용	33,617	27,769	5,848	21.06
IV. 비배분수익	23,566	21,654	1,912	8.83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311,360	301,392	9,968	3.31
VI. 일반수익	347,838	374,253	△26,415	△7.06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36,478)	(72,861)	△36,383	△49.93

- 가평군의 2024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4,173억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044억원을 차감한 2,129억원이며 총 11분야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분야는 “사회복지”(45억원), “환경”(37억원), “일반공공행정”(36억원)이었다
- 또한, 2024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855억원과 경비 27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운영비(이자비용) 2천만원, 기타비용(자산처분손실,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기타비용 등) 33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129억원, 기타수익(전입금수익,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기타비배분수익 등) 10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24회계연도 가평군의 재정운영결과는 △364억원으로 전년도에 728억원보다 363억원(50.06%) 감소하였는데, 이는 관리운영비 62억원(7.6%), 비배분비용 58억원(21.06%) 증가하였으나 일반수익 264억원(△7.06), 사업순원가 21억원(0.1%) 감소하였으나 비배분수익 19억원(8.84%)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5 성과보고서

- 가평군은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가평’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32개)-정책사업목표(9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개, %)

부 서 명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B)	달성 (C)	미달성	달성률 [(B+C)/A]
계	32	95	175	25	136	14	92
기획예산담당관	1	3	3	1	2	0	100
감사담당관	1	5	7	2	5	0	100
도종합체전추진단	1	1	4	1	3	0	100
자치행정과	1	2	5	0	5	0	100
안전재난과	1	5	11	1	10	0	100
회계과	1	2	2	0	1	1	50
세정과	1	1	4	2	1	1	75
민원지적과	1	2	4	1	3	0	100
복지정책과	1	5	5	1	4	0	100
행복돌봄과	1	4	11	1	10	0	100
일자리정책과	1	5	5	0	5	0	100
소상공인지원과	1	3	6	1	4	1	83
문화체육과	1	4	9	0	9	0	100
관광과	1	3	12	2	8	2	83
농업정책과	1	4	5	2	3	0	100
축산정책과	1	3	6	0	6	0	100
산림과	1	3	4	0	3	1	75
건설과	1	5	11	2	5	4	64
환경정책과	1	6	7	0	7	0	100
자원순환과	1	4	4	0	4	0	100
도시과	1	1	3	0	3	0	100
교통과	1	1	3	0	2	1	67
건축과	1	1	3	0	1	2	33
허가민원과	1	5	5	2	3	0	100
보건정책과	1	2	6	0	6	0	100
건강증진과	1	2	5	1	4	0	100
기술기획과	1	3	6	2	3	1	83
소득개발과	1	3	5	0	5	0	100
평생교육사업소	1	4	8	3	5	0	100
상수도사업소	1	1	2	0	2	0	100
하수도사업소	1	1	2	0	2	0	100
의회사무과	1	1	2	0	2	0	100

-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92%로 전년도 90.6%보다 1.4%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미달성 지표점검을 통한 원인분석 및 목표 달성 노력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⑥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 권

○ 2024회계연도 채권현황은 다음과 같다.

【채 권 현 황】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발생액	해당연도 상환소멸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합 계	3,799,414	874,090	507,000	4,166,503
일 반 회 계	3,412,274	351,775	334,147	3,429,901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210	-	-	1,210
기 타 특 별 회 계	385,930	522,315	172,853	735,392
기 금	-	-	-	-

-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166,503천원으로 일반회계 3,429,901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210천원, 기타특별회계 735,392천원이다.

2. 채 무

○ 2024회계연도 채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채 무 현 황】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합 계	-	-	-	-	-
일 반 회 계	-	-	-	-	-
공 기 업 특 별 회 계	-	-	-	-	-
기 타 특 별 회 계	-	-	-	-	-
기 금	-	-	-	-	-

해당연도말 채무현재액은 0원이다.

【연도별 채무상환 예정액】

(단위: 천원)

구 분	채무액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전년도이월액 기 준	-	-	-	-	-	-

3. 공유재산

○ 2024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2,188,592,321	138,358,112	57,324,410	2,269,626,023	
행정 재산	소 계	1,894,019,475	110,845,228	56,497,011	1,948,367,692
	공 용 재 산	410,389,198	44,257,264	13,162,705	441,483,757
	공 공 용 재 산	1,457,550,770	66,572,340	43,316,241	1,480,806,869
	기 업 용 재 산	24,677,242	-	-	24,677,242
	보 존 용 재 산	1,402,265	15,624	18,065	1,399,824
일 반 재 산	12,421,699	1,998,911	827,399	13,593,211	
건 설 중 인 재 산	282,151,147	25,513,973	-	307,665,120	

-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대비 81,033,702천원이 증가한 2,269,626,023천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건설중인 재산 255억원, 행정재산 54억원, 일반재산 11억원 증가하였다. * 「공유재산 대장가격 등록에 관한 기준」 제정('22.7월)

4. 물품

○ 2024회계연도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천원, 건)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1,244	214	22	1,436
금 액	12,349,645	4,946,163	715,643	16,580,165

- 물품은 전년대비 4,230,520천원이 증가한 16,580,165천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냉난방기 70개 202,492천원, 화물트럭 1대 248,812천원 취득 등이다.

Ⅲ.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 번호	제 목	검사 위원	조치계획 제출 부서
1	청사건립기금 조성방안 개선	최원중	회계과
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최원중	복지정책과
3	가평군 자활기금 기금운용 방안 개선 강구	최원중	복지정책과
4	국고보조금 사업[멧돼지 폐사체 처리비(ASF)] 집행 부적정 [자금 미교부]	최원중	환경정책과
5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상 기금보관상황 기재 누락	유근웅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재난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허가민원과, 평생교육사업소
6	세출결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유근웅	안전재난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소상공인지원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환경정책과, 도시과, 평생교육사업소
7	평생학습관 건립 세출결산 부적정	유근웅	평생교육사업소
8	도비 예산 확보 방안 강구	지병수	건설과
9	인건비 예산편성 과다책정	지병수	회계과
10	지방세 세입추계 철저	지병수	세정과
11	소규모 생활편의사업 집행 부진	지병수	조종면, 북면
12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금 집행잔액 과다발생	신현배	관광과
13	예산 적기 투입으로 사업효율성 제고 및 주민 민원 최소화	신현배	도시과
14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 미수납액 과다발생	신현배	교통과
15	재산세 물납 적정 여부 검토	홍인수	세정과
16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조치 미흡	홍인수	교통과

2024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	검사위원	최원중	소관부서	회계과
제 목	청사건립기금 조성방안 개선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기금 설치: 2021. 2.15.일(「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 조성목표액: 80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목표액	800	60	60	60	60	60	100	100	100	100	100
조성액	70	10	15	35	10	-	-	-	-	-	-
차 액	△730	△50	△45	△25	△50	△60	△100	△100	△100	△100	△100

－ 기금조성 현황(2024년도)

(단위: 천원)

기 금 명	전년도 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조성액 (E=A+B)
		계 (B=C+D)	조 성 액 (C)	사 용 액 (D)	
청사건립기금	6,047,249	1,058,911	1,058,911	-	7,106,160

□ 문 제 점

○ 청사건립기금은 2021. 2.15.일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및 ‘가평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일시적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소요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 2030년까지 총 800억원의 기금을 조성목표액으로 정하면서 연도별 기금조성 계획도 함께 정하였으나, 그동안 기금조성은 2021년도 10억원, 2022년도 15억원, 2023년도 35억원, 2024년도 10억원으로 지난 4년간 조성된 기금은 총 70억원으로 조성목표액 대비 8.75%, 2024년까지 연도별 계획목표액 누계 240억원 대비 170억원이 부족한 29.17%에 불과한바,

앞으로 남은 6년의 기간에 부족한 기금 730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 현재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조성 재원 방안으로는 2030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을

조성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당시 위원회에서 청사건립의 방향 및 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최소한의 기금을 적립하여 청사건립 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라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 조치계획으로 2023년까지 800억원 조성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기간으로 조정하여 연간 조성하여야 할 기금의 부담을 줄이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향후 청사건립 추진 시 비용 절감이 가능한 설계 및 건축방안을 모색하여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한다고 하였으나,
- 청사건립에 가장 중요한 사항인 기금의 조성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가평균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기금의 조성 재원 방안으로는 2030년까지 800억원을 조성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조성 재원조달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는바,
- 이에 대한 방안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기금재원으로 편성하는 방안과 일정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불임 자료를 참고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

[붙임]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 자원(관련 조문 발취)

(단위: 억원)

시·군	기금의 조성	제·개정일	2023년도 조성금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동두천시	제3조(기금의 조성)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전입금을 <u>2020년부터 매 회계 연도마다 28억원 이상 세출예산에 계상</u> 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019. 2. 1.	55.7	158.0
여주시	제3조(기금의 조성) ② 기금은 1,500억원을 목표로 <u>매년 30억원 이상 시비로 적립</u> 한다.	2018. 3.27.	44.3	932.9
익산시	제3조(기금의 조성) ② 시장은 <u>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u> 하여야 한다.	2016.11.30.	71.1	468.7
강진군	제3조(기금의 조성)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전출금은 청사 건립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u>회계연도마다 5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u> 할 수 있다.	2018. 1.31.	52.8	219.2
문경시	제4조(기금의 조성) ② 기금은 300억 원을 목표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u>매 회계연도마다 30억원 이상으로 시비를 적립</u> 한다.	2021. 7. 1.	60.7	120.7
곡성군	제4조(기금의 조성)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전출금을 <u>회계연도마다 5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u> 하여 적립한다.	2018.10. 8.	64.0	248.6
양평군	제3조(기금의 조성)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출금을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하여 <u>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7퍼센트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u> 하여야 한다.	2023.12.27.	34.0(24년)	
금산군	제3조(기금의 조성) ②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은 <u>매년 30억원의 군비로 적립</u> 하며, 필요시 <u>매년 적립액을 초과</u> 하여 적립할 수 있다.	2019.11.15.	63.3	124.5

시·군	기금의 조성	제·개정일	2023년도 조성금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무안군	제3조(기금의 조성)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전출금을 신청사 건립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u>매회계연도 마다 15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u> 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019. 3. 4.	150.0	565.4
장흥군	제4조(기금의 조성)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전출금은 청사 건립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u>회계연도마다 5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u> 한다. 다만, 재정여건 악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6.12.30.	113.1	577.5
군산시	제3조(기금의 조성) ② 시장은 <u>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u> 하여야 한다.	2024.12.16.		제정
상주시	제6조(적립금액)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u>매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해 및 재정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하로 출연할 수 있다.</u>	2010. 9.16.	16.4	1,333.0

2024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2	검사위원	최원중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제 목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D)	미수납액 (E=B-C-D)	비 고
2024년도	1,238,533	1,352,749	1,240,611	7,085	105,053	

- 「가평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지출)제1항에 따르면,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수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고 기금부담액과 대신 지급금을 구분하여 결정한 후 의료급여관리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신 지급금 상환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문 제 점

- 2024회계연도 가평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미수납액은 총 25건에 105,053,370원이고, 이 중 5년 이상 경과한 미수납액은 18건에 85,086,380원이며, 정리보류액(결손처분)은 1건에 7,084,940원으로 결산되었음.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제1항에 따르면,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의료급여법」 제24조(결손처분)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의료급여법」 】

제24조(결손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아울러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기능)제6호에 ‘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정책과에서는 2024년도에 정리보류(결손처분)한 실적이 1건(사망말소)에 7,084,940원으로 저조한바, 나머지 미수납액 중 2025년 완납한 2건(62,080원)과 정상납부 중인 6건(27,939,750원)을 제외한 17건(소액 1건, 미납 16건)에 대해서는 납부 가능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소액 1건/580원, 미수납(체납) 16건/77,050,960원

【 「의료급여법」 】

제34조(끝수 및 소액의 처리) ① 의료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징수·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지급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미수납액의 징수대책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조세의 멸실방지에 노력하기 바라며, 완납 및 정상납부를 제외한 체납액 16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담당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속히 시효완성 정리하고,
- 소액 1건(580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부과를 취소하기 바람.

[붙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미수납액 내역

(단위: 원)

회계연도	최초본세	최종본세	미수납액	납부자명	비 고
계	142,619,510	115,142,320	105,053,370	25건	
2014	580	580	580	이*****	2천원 미만 (부과 취소 대상)
2012	1,264,210	1,264,210	160,000	임**	체납(미납)
2012	1,292,710	1,292,710	646,380	박**	
2012	502,840	502,840	300,000	정**	
2013	3,429,190	3,429,190	2,579,190	김**	
2014	8,100	8,100	8,100	의*****	
2016	42,560	42,560	42,560	참*****	
2016	1,136,280	1,136,280	1,136,280	연*****	
2017	73,640	73,640	73,640	우**	
2018	51,030	51,030	51,030	이**	
2018	1,138,970	1,138,970	738,970	최**	
2019	3,211,380	3,211,380	3,211,380	박**	
2019	3,211,380	3,211,380	3,211,380	박**	
2019	7,698,210	7,698,210	7,698,210	최**	
2019	55,971,160	55,971,160	55,971,160	최**	
2021	678,000	678,000	678,000	김**	
2022	544,680	544,680	544,680	임**	
2018	20,201,545	6,462,950	4,162,950	구**	
2018	20,201,545	6,462,950	5,062,490	양**	
2023	16,490,610	16,490,610	16,040,610	정**	
2024	333,960	333,960	83,960	박**	
2024	724,730	724,730	624,730	최**	
2024	3,465,010	3,465,010	1,965,010	김**	
2017	32,080	32,080	32,080	김**	2025년도 완납
2023	915,110	915,110	30,000	김**	

2024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3	검사위원	최원중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제 목	가평군 자활기금 기금운용 방안 개선 강구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1. 가평군 자활기금 운용 실적(2023년도~2024년도)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 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조 성 액 (F=A+B)
		계 (B=C-D)	조 성 액 (C)	사 용 액 (D)	비 율 (E=D/C)	
2024년도	613,620	10,258	10,858	600	5.5%	623,878
2023년도	602,792	10,828	10,828	0	0.0%	613,620

※ 2022.1.1. 일 기금을 신설하였으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미수립으로 실질적인 기금운용은 2023년도부터 운용함.

2. 자활기금 운용 실적이 높은 시·군(2023년도)

(단위: 천원)

시·군	전년도 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조 성 액 (F=A+B)
		계 (B=C-D)	조 성 액 (C)	사 용 액 (D)	비 율 (E=D/C)	
의정부시	1,900,000	-37,000	88,000	125,000	142.0%	1,863,000
하 남 시	1,189,220	-44,644	25,921	70,565	272.2%	1,144,576
광 주 시	1,754,445	-80,549	80,867	161,416	199.6%	1,673,896
서 산 시	1,039,505	-37,253	47,844	85,097	177.9%	1,002,252
용 인 시	3,089,000	-22,000	164,000	186,000	113.4%	3,067,000
평 택 시	1,819,415	-25,153	73,227	98,380	134.3%	1,794,262
보 령 시	587,772	-20,968	25,837	46,805	181.2%	566,804
철 원 군	530,000	-8,000	7,000	15,000	214.3%	522,000

3. 자활기금 운용 실적이 낮은 시·군(2023년도)

(단위: 천원)

시·군	전년도 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조성액 (F=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비율 (E=D/C)	
연천군	200,000	300,000	300,000	0	0.0%	500,000
창녕군	580,027	20,048	25,048	5,000	20.0%	600,075
무주군	1,358,000	25,000	35,000	10,000	28.6%	1,383,000
양구군	1,129,086	46,833	109,367	62,534	57.2%	1,175,919
남해군	928,443	23,335	23,335	0	0.0%	951,77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18조의7 및 「가평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 1. 1일 ‘가평군 자활기금’을 설치하여 2023년부터 기금을 운용해 오고 있음.

□ 문제점

- 가평군에서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가평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 중에 있는 가평군 자활기금이 위 현황(1)과 같이 지난 2년간 조성된 기금의 사용액이 전혀 없음.

※ 자활기금운용심의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600천원만 집행(2024년도)

- 이는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2024.11.29.) 검토보고 당시에 자활기금 규모 변경사유로 관내 자활기업·단체 및 자활참여자 사업 부재로 인하여 비용자성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지출 계획을 변경한 바 있으며, 2024년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자가 없어 비용자성 사업비 전액을 삭감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성·운용하는 기금인바, 그동안 미진한 자활 기금에 대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립된 자활기금에 대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 현황(2)와 같이 기금운용 실적이 높은 시·군과 위 현황(3)과 같이 낮은 시·군을 비교 검토한바,
- 기금운용 실적에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활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등 지역 인프라 구성의 차이로, 자활기업이나 자활센터가 없는 시·군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임.
- 따라서,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평균 여건에 부합하는 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발굴에 더 노력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을 돕는 기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권고함.

2024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4	검사위원	최원중	소관부서	환경정책과
제 목	국고보조금 사업[멧돼지 폐사체 처리비(ASF)] 집행 부적정 (자금 미교부)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ASF)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자금교부 (B)	집행액 (C)	집행잔액 (D=B-C)	미교부액 (E=A-B)	비 고
계	155,000	145,000	155,000	▲10,000	10,000	
국 비	77,500	67,500	77,500	▲10,000	10,000	자금미월
군 비	77,500	77,500	77,500	0	0	

○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ASF) 지출 내역

(단위: 천원)

지출일자	지출금액	지출일자	지출금액	비 고
계	155,000			
2024.02.06.	1,300	2024.07.22.	29,500	※ 자금교부일 : 2024. 4. 3.
2024.03.08.	2,200	2024.08.27.	30,000	
2024.04.03.	5,100	2024.10.10.	23,000	
2024.05.02.	7,000	2024.10.21.	25,300	
2024.06.11.	9,900	2024.12.23.	21,700	

□ 문 제 점

- 2024년도 “멧돼지 폐사체 처리사업(국비보조금) 155백만원” 사업비 집행에 있어 당해 회계연도에 국비 10백만원의 자금교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미교부 10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55백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제14조(집행의 제한) 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한 것으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세출예산을 배정받았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환경정책과에서는 국비 자금교부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2024.12.23.일 잔여 예산 22백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국비 10백만원과 군비 10백만원 등 20백만원을 초과 집행하였음.

또한, 국비 자금교부가 2024. 4. 3.일 최초 교부되었음에도 마찬가지로 국비 자금교부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2024. 2. 6.일과 3. 8.일 두 차례에 걸쳐 4백만원을 사전에 집행한 사실이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10조(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에 따라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여 차후에는 예산이 초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024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5	검사위원	유근웅	소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재난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허가민원과, 평생교육사업소
제 목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상 기금보관상황 기재 누락				

개선 및 권고사항

현 황

- [붙임 1]의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참고

문 제 점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제372호(2025. 01. 01.))}에 따르면 기금결산을 함에 있어서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를 작성할 시, “기금보관상황”란에는 금융기관, 예금종류, 예탁처,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상 기금결산 부분에 있어서 “기금조성세부명세서” 작성 시, “기금보관상황”란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제372호(2025. 01. 01.))}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 기금결산 부분에 있어서 “기금세부명세서” 작성 시 “기금보관상황”의 기재 사항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붙임1]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단위:원)

구분 기금명	근거 법규	설치 목적	설치 연도	운용 관서	재원 조달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 말잔액 ④	기보상 금관황
						전년도까지 ①	당해연도 ②	계	사유	금액 ③		
계						127,465,426,450	8,069,155,636	135,534,582,086		9,006,439,870	126,528,142,21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2020	기획예산담당관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90,130,098,711	4,757,483,970	94,887,582,681	예수금 원금 상환 및 예수금 이자상환	7,959,179,000	86,928,403,68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안정성 제고	2020	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전입금	701,898,876	16,962,270	718,861,146			718,861,146	
가평군 고향사랑기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조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2022	기획예산담당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모금한 기부금	112,140,790	153,973,350	266,114,140	답례품 제공으로 약 36백만원, 홍보비 10만원, 전산시스템 유지비 17백만원 등에 사용	65,105,900	201,008,240	
재난관리기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재난예방, 재난응급대책,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	2005	안전재난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최저적립	3,276,944,190	780,822,130	4,057,766,320	자연재난 응급복구 시 사용	277,575,900	3,780,190,420	
청사건립기금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가평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	2021	회계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6,047,248,400	1,058,910,760	7,106,159,160	가평군 신 청사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전출금 및 예탁금 외 별도 재무활동이 없는 적립성 기금임		7,106,159,160	
가평군 자활기금	가평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	가평군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 도모	2021	복지정책과	가평군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613,620,211	10,857,850	624,478,061	전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지급	600,000	623,878,061	예탁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가평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지원	2003	문화체육과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1,603,733,512	29,152,116	1,632,885,628	문화예술인큐베이팅 사업 외 16개 사업진행	37,100,000	1,595,785,628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	2010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출연금 및 운용 수익	425,487,570	207,771,630	633,259,200	비용자성사업비 지출	157,028,320	476,230,880	

(단위:원)

구분 기금명	근거 법규	설치 목적	설치 연도	운용 관서	재원 조달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 말잔액 ④	기보 상 금관 황
						전년도까지 ①	당해연도 ②	계	사유	금액 ③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광고물 등 정비	2014	도시과	법 제 17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 · 도 보조금, 그 밖의 기금운용수익 및 옥외광고물로 조성한 수익금	577,124,070	125,837,080	702,961,150	옥외광고물 정비 등 사업수행	28,283,960	674,677,190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제89조,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	2002	허가 민원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군귀속분,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및 운용수익	121,267,215	70,900,030	192,167,245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 지출 등	61,668,720	130,498,525	
가평군 장학기금	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우수한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균등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양성	2008	평생교육 사업소	자발적 기부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등	23,855,862,905	856,484,450	24,712,347,355	2024년 가평군 장학금 지급(419,298,070원), 2024년 가평군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600,000원)	419,898,070	24,292,449,285	

2024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6	검사위원	유근웅	소관부서	안전재난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소상공인지원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환경정책과, 도시과, 평생교육사업소
제 목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개선 및 권고사항								
<input type="checkbox"/> 현 황								
○ 예산현액 대비 집행을 60% 미만사업 중 1억원이상 집행잔액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9개 부서	11건	14,768,430	7,018,994	2,438,876	1,009,269	4,301,291	47.5	
안전 재난과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및 시설 확충	2,041,981	1,059,319	719,994	-	262,668	51.9	
	방법 시스템구축	2,902,098	1,640,880	303,098	-	958,120	56.5	
복지 정책과	공설자연장지 운영 및 관리	464,368	182,599	150,511	-	131,258	39.3	
행복 돌봄과	가평균 장애인 재활(체육)지 원센터건립	888,170	510,805	221,509	-	155,856	57.5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사랑상 품권 발행지원 (도비보조금)	1,401,000	-	-	350,000	1,051,000	0	
문화 체육과	가평역사박 물관 건립사업	244,915	92,598	40,461	-	111,856	37.8	
관광과	관광자원시설 운영관리	3,103,028	1,851,348	1,003,303	-	248,377	59.7	

	기타	241,674	116,400	-	-	125,274	48.2	
환경 정책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889,000	1,560,431	-	659,269	669,300	54	
도시과	2040 가평 군기본계획 재수립	422,240	-	-	-	422,240	0	
평생교육사 업소	한석봉 도서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	169,956	4,614	-	-	165,342	2.7	

□ 문제점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집행율 60%미만 사업 중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은 9개부서 11개 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중 보조사업 2건, 자체사업이 9건임. 이를 사유별로 보면 시설운영 및 관리에 따른 예비비 성격이 2건, 상급기관과의 협의·승인지연이 3건, 행정여건변화 3건, 보조사업(국비·도비 중복지원) 1건, 공사지연 2건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예비비 성격의 사업규모,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상급기관과의 적법한 행정처리 미흡, 행정여건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등 제반여건들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추경포함)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소관부서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발생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불용액 내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아울러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대·내외적 제반여건과 실행가능성 등 사회현상을 고려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적정한 필요예산을 본예산 내지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2024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7	검사 위원	유근웅	소관 부서	평생교육사업소
제 목	평생학습관 건립 세출결산 부적정				

개선 및 권고사항

현 황

평생학습관건립 세출결산현황

(단위:원)

과목 (조직-사업)	예산액 ㉠	예산성립 후 증감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평생학습관 건립	12,433,000,000	4,853,731,500	17,286,731,500	6,512,899,940	8,063,526,590	2,167,233,630	543,071,340

문 제 점

-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2023년도 이월예산액 4,854백만원 중 미집행액 2,710백만원을 계속비 이월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전산처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반납금 2,167백만원과 집행잔액 543백만원으로 처리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중 평생교육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상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 당초 계속비 이월 8,063백만원을 10,773백만원으로 수정하고, 보조금 반납금 2,167백만원과 집행잔액 543백만원을 삭제하여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야 할 것임.

(당 초)

구분	총사업비(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계	17,286,731,500	계	6,512,899,940	계	8,063,526,590	계	2,710,304,970
소 계	계	12,433,000,000	계	4,368,973,410	계	8,063,526,590	계	500,000
당해일반회계	시도비	12,306,000,000	시도비	4,359,473,410	시도비	7,946,526,590	시도비	-
	시군구비	127,000,000	시군구비	9,500,000	시군구비	117,000,000	시군구비	500,000
소 계	계	4,853,731,500	계	2,143,926,530	계	-	계	2,709,804,970
이월(계속비) (일반회계)	시도비	4,069,000,000	시도비	1,901,766,370	시도비	-	시도비	2,167,233,630
	시군구비	784,731,500	시군구비	242,160,160	시군구비	-	시군구비	542,571,340

(정 정)

구분	총사업비(예산현액)		집행액 ^㉞		이월액 ^㉟		집행잔액 [㉡] = $a-b-c$	
합 계	계	17,286,731,500	계	6,512,899,940	계	10,773,331,560	계	500,000
소 계	계	12,433,000,000	계	4,368,973,410	계	8,063,526,590	계	500,000
당회(일반회계)	시도비	12,306,000,000	시도비	4,359,473,410	시도비	7,946,526,590	시도비	-
	시군구비	127,000,000	시군구비	9,500,000	시군구비	117,000,000	시군구비	500,000
소 계	계	4,853,731,500	계	2,143,926,530	계	2,709,804,970	계	-
이월(계속) (일반회계)	시도비	4,069,000,000	시도비	1,901,766,370	시도비	2,167,233,630	시도비	-
	시군구비	784,731,500	시군구비	242,160,160	시군구비	542,571,340	시군구비	-

-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제372호(2025. 01. 01.)} 호에 의거 “결산 감사위원의 감사결과 결산서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때에는, 지자체장은 이를 시정한 후, 지방의회에 제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사업소장은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결산서를 시정 제출하기 바람.

2024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8	검사위원	지병수	소관부서	건설과
제 목	도비 예산 확보 방안 강구				

개선 및 권고사항																																																																									
<p><input type="checkbox"/> 현 황</p> <p>○ 제설제 구입 예산 집행현황(2022년 ~ 2025년)</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4">예산액</th> <th colspan="4">집행액</th> <th rowspan="2">집행잔액</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이월액</th> <th>본예산 & 추경예산</th> <th>예비비</th> <th>계</th> <th>이월액</th> <th>본예산 & 추경예산</th> <th>예비비</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691 균: 600 도: 91</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691</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568</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568</td> <td style="text-align: center;">123</td> <td></td> </tr> <tr> <td>2023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123 명시이월 123</td> <td style="text-align: center;">1,016 균: 925 도: 91</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 1차 300 2차 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639</td> <td style="text-align: center;">123</td> <td style="text-align: center;">91 균: 0 도: 91</td> <td style="text-align: center;">495</td> <td style="text-align: center;">709</td> <td style="text-align: center;">930</td> <td></td> </tr> <tr> <td>2024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740 사고이월 740</td> <td style="text-align: center;">1,191 균: 1,100 도: 91</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81</td> <td style="text-align: center;">740</td> <td style="text-align: center;">91 균: 0 도: 91</td> <td style="text-align: center;">143</td> <td style="text-align: center;">974</td> <td style="text-align: center;">1,107</td> <td></td> </tr> <tr> <td>2025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1,107 명시이월 1,107</td> <td style="text-align: center;">91 도: 91</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198</td> <td style="text-align: center;">912 본청 876 읍면 36</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912</td> <td style="text-align: center;">286</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이월액	본예산 & 추경예산	예비비	계	이월액	본예산 & 추경예산	예비비	계	2022년	0	691 균: 600 도: 91	0	691	0	568	0	568	123		2023년	123 명시이월 123	1,016 균: 925 도: 91	500 1차 300 2차 200	1,639	123	91 균: 0 도: 91	495	709	930		2024년	740 사고이월 740	1,191 균: 1,100 도: 91	150	2,081	740	91 균: 0 도: 91	143	974	1,107		2025년	1,107 명시이월 1,107	91 도: 91	-	1,198	912 본청 876 읍면 36	-	-	912	286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이월액	본예산 & 추경예산	예비비	계	이월액	본예산 & 추경예산	예비비	계																																																																	
2022년	0	691 균: 600 도: 91	0	691	0	568	0	568	123																																																																
2023년	123 명시이월 123	1,016 균: 925 도: 91	500 1차 300 2차 200	1,639	123	91 균: 0 도: 91	495	709	930																																																																
2024년	740 사고이월 740	1,191 균: 1,100 도: 91	150	2,081	740	91 균: 0 도: 91	143	974	1,107																																																																
2025년	1,107 명시이월 1,107	91 도: 91	-	1,198	912 본청 876 읍면 36	-	-	912	286																																																																
<p><input type="checkbox"/> 문 제 점</p> <p>○ 기후변화등으로 잦은 폭설이 이어지면서 제설제 구입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568백만원 2023년 709백만원 2024년 974백만원을 집행하였음.</p> <p>○ 제설제 집행예산 중 지방도비보조는 2022~2024년 3년간 증액없이 91백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나 균비는 매년 증가하였음.</p> <p>○ 또한 제설제 구입은 재난 대비를 위한 것으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고 매년 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재료비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개 선 및 권 고 사 항</p> <p>○ 기후변화로 폭설이 잦아지면서 제설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고 있음에도 도비는 증액되지 않고 균비만 증액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제설제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도비도 증액되도록 노력이 요구됨</p> <p>○ 아울러 재난대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료비에 충분한 예산반영이 요구됨.</p>																																																																									

2024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9	검사위원	지병수	소관부서	회계과
제 목	인건비 예산편성 과다책정				

개선 및 권고사항																																										
<p><input type="checkbox"/> 현 황</p> <p>○ 인건비 예산현황(3개년)</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연도</th> <th rowspan="2">본예산</th> <th colspan="3">추경</th> <th rowspan="2">집행액</th> <th rowspan="2">집행잔액</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1차</th> <th>2차</th> <th>3차</th> </tr> </thead> <tbody> <tr> <td>2022</td> <td>57,356,970</td> <td>57,552,058</td> <td>59,740,538</td> <td>60,101,261</td> <td>51,721,308</td> <td>8,379,953</td> <td></td> </tr> <tr> <td>2023</td> <td>60,569,612</td> <td>60,684,335</td> <td>60,712,847</td> <td>60,714,847</td> <td>54,568,758</td> <td>6,146,089</td> <td></td> </tr> <tr> <td>2024</td> <td>64,295,468</td> <td>64,196,315</td> <td>59,483,651</td> <td>59,483,651</td> <td>56,607,309</td> <td>2,876,342</td> <td></td> </tr> </tbody> </table>								연도	본예산	추경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1차	2차	3차	2022	57,356,970	57,552,058	59,740,538	60,101,261	51,721,308	8,379,953		2023	60,569,612	60,684,335	60,712,847	60,714,847	54,568,758	6,146,089		2024	64,295,468	64,196,315	59,483,651	59,483,651	56,607,309	2,876,342	
연도	본예산	추경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1차	2차	3차																																						
2022	57,356,970	57,552,058	59,740,538	60,101,261	51,721,308	8,379,953																																				
2023	60,569,612	60,684,335	60,712,847	60,714,847	54,568,758	6,146,089																																				
2024	64,295,468	64,196,315	59,483,651	59,483,651	56,607,309	2,876,342																																				
<p><input type="checkbox"/> 문 제 점</p> <p>○ 2023년 일반회계 인건비 60,715백만원 중 집행액은 54,569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146백만원임.</p> <p>○ 2024년 본 예산에 64,295백만원을 편성후 2회 추경 시, 59,484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집행액은 56,607백만원으로 2,87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p>																																										
<p><input type="checkbox"/> 개 선 및 권 고 사 항</p> <p>○ 예산의 편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동을 하여야 함에도 2024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편성은 집행액 56,607 백만원 보다 7,688백만원을 과하게 편성하였으며,</p> <p>○ 3차 추경에 조정된 59,483백만원으로 조정하였음에도 2,876 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p> <p>○ 인건비는 법정 필수 경비로 타예산에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하지만, 직원수·인건비 인상을 등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만큼 추계를 정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 필요.</p>																																										

2024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0	검사위원	지병수	소관부서	세정과
제 목	지방세 세입추계 철저				

개선 및 권고사항																																												
<p><input type="checkbox"/> 현 황</p> <p>○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 및 결산 현황</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과목</th> <th style="width: 10%;">본예산</th> <th style="width: 10%;">제1회</th> <th style="width: 10%;">제2회</th> <th style="width: 10%;">제3회</th> <th style="width: 10%;">결산액 (실제수납액)</th> <th style="width: 10%;">예산액 대비 수납율 (%)</th> <th style="width: 10%;">당초 예산액 대비</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84,885,000</td> <td>85,591,000</td> <td>88,644,551</td> <td>95,842,849</td> <td>99,609,565</td> <td>104</td> <td>117.3</td> <td></td> </tr> <tr> <td>지방세</td> <td>70,600,000</td> <td>70,600,000</td> <td>66,100,000</td> <td>65,820,000</td> <td>66,916,995</td> <td>101.6</td> <td>94.7</td> <td></td> </tr> <tr> <td>세외수입</td> <td>14,285,000</td> <td>14,991,000</td> <td>22,544,551</td> <td>30,022,849</td> <td>32,692,570</td> <td>108.9</td> <td>228.8</td> <td></td> </tr> </tbody> </table>									과목	본예산	제1회	제2회	제3회	결산액 (실제수납액)	예산액 대비 수납율 (%)	당초 예산액 대비	비고	합계	84,885,000	85,591,000	88,644,551	95,842,849	99,609,565	104	117.3		지방세	70,600,000	70,600,000	66,100,000	65,820,000	66,916,995	101.6	94.7		세외수입	14,285,000	14,991,000	22,544,551	30,022,849	32,692,570	108.9	228.8	
과목	본예산	제1회	제2회	제3회	결산액 (실제수납액)	예산액 대비 수납율 (%)	당초 예산액 대비	비고																																				
합계	84,885,000	85,591,000	88,644,551	95,842,849	99,609,565	104	117.3																																					
지방세	70,600,000	70,600,000	66,100,000	65,820,000	66,916,995	101.6	94.7																																					
세외수입	14,285,000	14,991,000	22,544,551	30,022,849	32,692,570	108.9	228.8																																					
<p><input type="checkbox"/> 문 제 점</p> <p>○ 2024년도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편성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당초 70,600백만원 편성하였고 제2회 추경 시, 66,100 백만원으로 제3회 추경 시, 65,820백만원으로 조정하고 실제 수납 결산액은 66,917백만원으로 101.6%이다.</p> <p>○ 세외 수입은 당초 14,285백만원에서 제1회 추경 14,991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 22,545백만원 제3회 추경 30,023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율은 108.9%이고 당초 예산 대비는 228.8%증가하는 등 세입추계 소홀.</p>																																												
<p><input type="checkbox"/> 개 선 및 권 고 사 항</p> <p>○ 지방세 등을 추정하는 세수 추계 방식은 다양하지만,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작년도 경제 동향, 징수 목표, 매년의 징수실적, 편성연도의 특징적 변동사항 등을 검토 및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충분히 계상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필요.</p>																																												

2024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1	검사위원	지병수	소관부서	조종면, 북면
제 목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집행부진(소극행정)				

개선 및 권고사항																																																					
<p><input type="checkbox"/> 현 황</p> <p>○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집행현황 (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읍·면별</th> <th style="width: 15%;">예산액</th> <th style="width: 15%;">집행액</th> <th style="width: 15%;">집행잔액</th> <th style="width: 15%;">집행율 (%)</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479,200</td> <td style="text-align: right;">1,374,730</td> <td style="text-align: right;">104,470</td> <td style="text-align: center;">90.5</td> <td></td> </tr> <tr> <td>가평읍</td> <td style="text-align: right;">356,200</td> <td style="text-align: right;">351,993</td> <td style="text-align: right;">4,207</td> <td style="text-align: center;">98.8</td> <td></td> </tr> <tr> <td>설악면</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98,490</td> <td style="text-align: right;">1,510</td> <td style="text-align: center;">99.2</td> <td></td> </tr> <tr> <td>청평면</td> <td style="text-align: right;">316,000</td> <td style="text-align: right;">315,823</td> <td style="text-align: right;">177</td> <td style="text-align: center;">99.9</td> <td></td> </tr> <tr> <td>상면</td> <td style="text-align: right;">202,000</td> <td style="text-align: right;">201,665</td> <td style="text-align: right;">335</td> <td style="text-align: center;">99.8</td> <td></td> </tr> <tr> <td>조종면</td> <td style="text-align: right;">203,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64,814</td> <td style="text-align: right;">38,186</td> <td style="text-align: center;">81.1</td> <td></td> </tr> <tr> <td>북면</td> <td style="text-align: right;">202,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41,945</td> <td style="text-align: right;">60,055</td> <td style="text-align: center;">70.2</td> <td></td> </tr> </tbody> </table>						읍·면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계	1,479,200	1,374,730	104,470	90.5		가평읍	356,200	351,993	4,207	98.8		설악면	200,000	198,490	1,510	99.2		청평면	316,000	315,823	177	99.9		상면	202,000	201,665	335	99.8		조종면	203,000	164,814	38,186	81.1		북면	202,000	141,945	60,055	70.2	
읍·면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계	1,479,200	1,374,730	104,470	90.5																																																	
가평읍	356,200	351,993	4,207	98.8																																																	
설악면	200,000	198,490	1,510	99.2																																																	
청평면	316,000	315,823	177	99.9																																																	
상면	202,000	201,665	335	99.8																																																	
조종면	203,000	164,814	38,186	81.1																																																	
북면	202,000	141,945	60,055	70.2																																																	
<p><input type="checkbox"/> 문 제 점</p> <p>○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은 98~99%의 집행을 한 반면, 조종면 81.1% 집행으로 38,186천원 북면 70.2% 집행으로 60,05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p>																																																					
<p><input type="checkbox"/> 개 선 및 권 고 사 항</p> <p>○ 주민불편사항 민원발생 시, 즉각 보수 등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 하여도 주민불편사항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민원불편 소요사업 조사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신뢰 제고 필요.</p>																																																					

2024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2	검사위원	신현배	소관부서	관광과
제 목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금 집행잔액 과다발생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1. 관내 주요 관광지 방문자 수 현황(2024년)

(단위: 명)

구 분	계	가 레일파크	쁘띠프랑스	아침고요 원예수목원	자라섬 캠핑장	남이섬
계	3,558,929	120,120	329,640	688,027	536,231	1,884,911
내국인	2,549,749	92,894	163,350	587,696	535,087	1,170,722
외국인	1,009,180	27,226	166,290	100,331	1,144	714,189

2.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본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증 감
2024년	100,000	0	0	50,000	△50,000

3.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4년	50,000	21,920	0	28,080	43.84

○ 국외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라섬 꽃 페스타(축제)를 포함한 관내 관광지 및 음식점을 방문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신청서 등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외국인 4인 이상 단체/1인당 10,000원~15,000원 지원)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문제점

- 2024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으나, 예산편성 시 예산 추계에 있어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 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 5천만원(▲50%)을 삭감하여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 보임.
- 또한, 지원금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2024년도 당초 본예산(1억원) 대비 28.08%인 28,080천원을 지출하였고, 마지막 추가경정예산(5천만원) 대비 43.84%로 예산집행이 매우 저조하며,
- 위 현황(1)의 ‘관내 주요 관광지 방문자 수 현황[주요 관광지점 통계자료(문화체육관광부)]’을 살펴보면, 2024년도에 남이섬 등 주요 관광지 5개소에 3,558,929명이 가평군 주요 관광지를 다녀갔으며, 이 중 외국인 방문객이 1,009,180명(남이섬 714,189명 포함)으로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관광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는 등 집행률을 제고하여 관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함.

2024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3	검사위원	신현배	소관부서	도시과
제 목	예산 적기 투입으로 사업효율성 제고 및 주민 민원 최소화				

개선 및 권고사항
<p>□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평지구 중로 2-13호선 설계, 보상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6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7. 8월: 토지보상완료(1구간) - 2020. 9월: 도로개설 공사 완료(1구간) - 2022. 5월: 토지보상 완료(2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달전리 450번지 위치한 토지·건축물·영업손실 보상완료(3구간) - 2025. 5월: 도로개설 공사 완료예정(2구간) <p>□ 문 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평지구 중로(2-13호선) 가평 역세권 도시 계획도로 공사와 관련, 사업지구 내 토지·건축물·영업 보상이 2022년도 완료되었으나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3년차 본예산·추경예산 등이 성립하지 않아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p>□ 개선 및 권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취지에 맞게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공사추진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가평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024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4	검사위원	신현배	소관부서	교통과
제 목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 미수납액 과다발생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1.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 미수납액 현황(2023년~2024년)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 보류액 (D)	미수납액 (E=B-C-D)	비 고
2024년도	65,000	471,242	61,386	71	409,785	
2023년도	38,000	405,678	42,363	0	363,315	

2. 2024년도 주·정차 과태료 현황

(단위: 천원)

단속(부과)		수 납		미수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139	126,965	2,761	107,713	378	19,252	84.84

3. 부과 후 5년 경과된 주·정차 과태료 현황

(단위: 천원)

단속(부과)		수납	정리보류	미수납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금액	
76,680	3,257,798	64,644	8,314	3,384	243,103	

□ 문 제 점

- 2024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 미수납액은 409,784,801원이고, 이 중 5년 이상 경과한 미수납액은 3,384건에 243,103천원이며, 정리보류액(결손처분)은 1건에 70,800원으로 결산되었음.

- 주·정차 과태료 미수납액이 409,785천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나, 정리보류(결손처분)한 실적이 2024회계연도에 1건(무재산)에 71천원에 불과함.
또한, 부과 후 5년 경과된 주·정차 과태료 미수납액이 243,103천원으로 미수납액의 59.32%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 미수납 건에 대하여 교통과에서는 압류 등 체납자 사후관리를 해오고 있으나, 위 현황(1), (3)과 같이 미수납액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무재산, 평가액부족, 행방불명, 사망말소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 정리보류 등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부과 후 5년이 경과된 미수납액 중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결손처분)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할 수 없는 채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시효완성 정리할 것을 권고함.

2024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5	검사위원	홍인수	소관부서	세정과
제 목	재산세 물납 적정 여부 검토				

개선 및 권고사항
<p><input type="checkbox"/> 현 황</p> <p>○ 물납 신청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자: 2024. 09. 19. - 신청물건: 청평면 대성리 산42-45(면적 2,450㎡) - 공시지가: 9,090원/㎡(시가표준 22,221,500원) - 물납 신청금액: 79,339,080원 <p>○ 감정가액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일감정원: 80,850,000원(기준일 2024. 5. 31. / 작성일 2024. 8. 22.) - (주)예일감정평가법인: 83,300,000원(기준일 2024. 5. 31. 작성일 2024. 5. 31.) <p><input type="checkbox"/> 문 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평면 대성리 산 42-8에서 분할된 토지로 사실상 소유권이 공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정확한 위치 확인이 불가 하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함 ○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그 시가는 토지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나, 감정가액 등으로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이 건은 시가표준액이 타당) <p><input type="checkbox"/> 개선 및 권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납의 허가 및 물납 가액의 적정 여부를 법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시기를 권함. ○ 물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검토하여 양도가액을 참고하시기를 권함.

2024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6	검사위원	홍인수	소관부서	교통과
제 목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조치 미흡				

개선 및 권고사항				
<input type="checkbox"/> 현 황 <input type="radio"/>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원)				
부서	회계	순세계잉여금 (2023)	세입예산 (2024)	비고
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41,640,005,815	41,560,343,000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56,197,556	56,197,000	
	기금특별회계			
건설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	63,802,598	63,802,000	
	사업특별회계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319,777,109	-	
환경정책과	수질개선특별회계	149,131,595	149,131,000	
<input type="checkbox"/>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와 관련,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시, 해당 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금에 이입하여야 함. 이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한 4개의 특별회계는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를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이입조치 하였음. ○ 주차장특별회계는 2023회계연도 전출금 미집행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 △320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세입예산에 이를 반영할 수 없었음. 이런 상황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부족을 야기할 수 있고 2024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사업 진행에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음. ○ 따라서 2024회계연도 진행 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의 자금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해당 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input type="checkbox"/> 개선 및 권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순세계잉여금 △320백만원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여 자금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인한 2025회계연도 예산 및 회계상 문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예산 및 회계집행절차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고 담당자뿐만이 아닌 부서장·팀장 등 직 상급자가 관심을 갖고 주차장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람. 				

IV

결산검사 우수사례

일련번호	1	검사위원	지병수	소관부서	상수도사업소
제 목	[우수사례]2024년도 상수도 사용수익현황				

우수사례

현 황

○ 급수수익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증감 내역	비고
계	7,524,442,080	7,937,343,490	-412,901,410	
수도사용료(가정용)	2,990,365,350	3,010,395,080	-20,029,730	
수도사용료(공공용)	125,946,680	115,058,580	10,888,100	
수도사용료(일반용)	4,150,437,580	4,551,083,290	-400,645,710	
수도사용료(대중탕용)	57,551,860	54,401,240	3,150,620	
수도사용료(공업용)	89,717,810	80,203,900	9,513,910	
원·정수 판매수입	110,422,800	126,201,400	-15,778,600	

- 상수도 급수수익을 보면 2023년 7,937백만원 2024년 7,524백만원으로 2023년도 보다 413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우수사례 선정 근거

○ 일반용 수용가 수 현황

(단위: 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일반용 수용가	17,257	17,599	18,290	
증감	-	증 342	증 691	

- 반면 수용가를 보면 2022년 17,257가구에서 2023년 17,599가구로 342가구가 증가하였고 2024년 18,290가구로 2023년 보다 691가구가 증가하였음.

- 수용가는 증가한 반면 사용수익은 감소하여 급수수익은 줄어들었으나 이는 수용가의 누수율이 낮아지면서 군민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 사용수익 감소사유 확인결과 군부대 등 누수방지 공사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상수도 이용률 제고와 군민의 재정지출을 줄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용요금이 증가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누수점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권고드립니다.

V.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연번	제 목	검사 위원	해 당 부 서	조치계획 제출 부서 (2024. 1월 조직개편 반영)
1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철저	김경수	회계과	회계과
2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중간정산) 착오지급	김경수	자치행정과, 상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상수도사업소
3	지방세(자동차세) 세입추계 과다 책정	김경수	세정과	세정과
4	2023회계연도 내 기타회계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미집행	김경수, 박근식	교통과	교통과
5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정산 소홀	박근식	교통과	교통과
6	주차장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소홀	박근식	교통과	교통과
7	예산의 부적절한 전용	신명철	안전재난과, 회계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8	세입예산 편성 및 징수결정 철저	신명철	감사담당관 안전재난과 세정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건설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보건정책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감사담당관 안전재난과 세정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건설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보건정책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9	이월사업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따른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	신명철	안전재난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문 화체육과 산림과 건설과 환경정책과 자원 순환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안전재난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문 화체육과 산림과 건설과 환경정책과 자원 순환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10	주요사업 적극 추진	신명철	문화체육과, 관광과, 건설과, 환경 정책과, 자원순환과, 평생교육사업 소	문화체육과, 관광과, 건설과, 환경 정책과, 자원순환과, 평생교육사업 소
11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유근웅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재난과 행복돌봄과 소 상공인지원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도시과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재난과 행복돌봄과 소 상공인지원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도시과
12	개발부담금 예산액 대비 과다징수결정 및 미수납액 과다 발생	유근웅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13	2023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비 집행률 제고	유근웅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14	지방 세입금 환급 과다 발생	이호신	세정과	세정과
15	옥외광고정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 부적절	이호신	도시과	도시과
16	세외수입 미납액 중 시효소멸분 결손처분 미이행	이호신	세정과	세정과

※ 소관부서는 2024년 1월 조직개편 반영한 부서로 기재함.

2023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	검사위원	김경수	소관부서	회계과
제 목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철저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기금 설치: 2021. 2. 15.(「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 조성목표액: 800억원

(단위: 억원)

구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목표액	800	60	60	60	60	60	100	100	100	100	100
조성액	70	10	15	35	10	-	-	-	-	-	-
차액	△730	△50	△45	△25	△50	△60	△100	△100	△100	△100	△100

– 기금 조성 현황(2023년도)

(단위: 천원)

기 금 명	전년도 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조성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청사건립기금	2,501,219	3,546,029	3,546,029	-	6,047,248

□ 문 제 점

○ 청사건립기금은 2021. 2.15.일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및 가평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일시적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소요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 조성목표액은 2030년까지 800억원이나 조성 현황을 보면, 2021년도 10억원, 2022년도 15억원, 2023년도 35억원 등 총 60억원(7.5%)으로, 전년도 결산 검사 시 청사건립기금 적립 계획을 재검토 개선 권고 후, 목표액 대비 4.37% 증가한 35억원을 적립하였으나, 적립 금액이 목표액인 180억원 (3년차)에 120억원이 미달하는 등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목표액을 조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기금관리부서에서는 2030년까지 8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청사건립기금 조성 금액이 2023년도까지(3년차) 60억원에 불과한바, 남은 목표기간(7년)과 예산투입 등을 고려해 볼 때 적립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니, 청사건립의 방향 및 계획을 면밀히 재검토 하기 바람.
- 아울러, 청사건립 시 1,00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시 최소한의 기금을 적립하여 청사건립 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조치사항(계획)

【회계과】

- 청사건립기금 조성 계획 연장 검토보고 추진
 - 현재(23년)까지의 기금 조성 실적과 가평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의 2030년까지 800억 원 조성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기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조성 기간을 연장하여 연간 조성해야 할 기금의 부담을 줄이고, 기금 조성 근거인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2025.12.31.)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수립하였음
 - ※ 회계과-19243(2024.7.3.)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 연장 검토보고
 - 아울러, 향후 청사건립 추진시 비용 절감이 가능한 설계 및 건축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하겠음

2023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2	검사위원	김경수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상수도사업소
제 목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중간정산) 착오 지급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중간 정산) 지급내역(2023년도)

(단위: 원)

연 번	소 속	구 분	지급일자	퇴직금 지급액	비 고
계				1,202,167,910	19명
1	본 청	정년퇴직	2023. 1.19.	518,807,450	5명
2	본 청	중간 정산	2023. 2.10.	110,779,350	2명
3	본 청	중간 정산	2023. 5. 4.	17,269,060	1명
4	본 청	의원면직	2023. 5. 4.	41,512,820	3명
5	본 청	정년퇴직	2023. 7.13.	145,310,960	1명
6	상수도사업소	중간 정산	2023. 9.18.	56,269,640	1명
7	본 청	중간 정산	2023. 9.18.	80,762,280	1명
8	본 청	당연퇴직	2023. 9.18.	41,559,920	2명
9	본 청	중간 정산	2023. 9.25.	90,167,490	1명
10	상수도사업소	중간 정산	2023.10.30.	86,661,100	1명
11	본 청	중간 정산	2023.10.30.	13,067,840	1명

□ 문 제 점

-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및 중간 정산 퇴직금 지급 시 대상자 소속이 본청일 때 『일반회계』에서 지급하여야 하고, 소속이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해당 사업소에서 지급하여야 함.
- 하지만, 2023년도 퇴직금 및 중간 정산 퇴직금 지급내역을 보면, 대상자 총 19명에 1,202,167,91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중 상수도사업소 직원 2명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 지급액 142,930,740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착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가평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공무원근로자 중간 정산 퇴직금이 집행되어야 하나, 『일반회계』에서 착오 지급된바,
- 착오 지급된 중간 정산 퇴직금 142,930,740원 지급 내역을 회계별로 결산 내용을 정리하기 바라며, 향후, 대상자가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 시에 기 지급된 중간 정산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회계 간에 안내하기 바람.

조치사항(계획)

【자치행정과】

-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출 사유 발생 시 「지방공기업법」 등 근거법령에 의거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지 않도록 주의 하도록 하겠음.
- 더불어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 지출 후 이력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에 정확히 기재하고, 퇴직금 지출 업무의 구분 등을 공문으로 알리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상수도사업소】

- 2021년 상수도사업소 공무원근로자 퇴직금(중간정산)을 특별회계에서 지급한 이후, 2023년 2인의 퇴직금(중간정산)을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음.(2022년 지급사실 없음)
- 차세대인사랑 시스템에 그간 공무원들의 퇴직금 지급내역은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공무원 퇴직금(중간정산) 지급 시 (기) 지급내역을 확인 후 착오 및 중복되지 않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주의하겠음,

2023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3	검사위원	김경수	소관부서	세정과
제 목	지방세(자동차세) 세입추계 과다 책정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지방세(자동차세) 결산 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2023년	7,400,000	8,309,734	7,491,988	817,746	90.16
2022년	7,550,000	8,180,543	7,386,473	794,070	90.29
2021년	9,200,000	9,279,175	8,567,874	711,301	92.33

○ 지방세(자동차세) 세입추계(최근 3년간)

(단위: 천원)

회계연도	본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증 감
2023년	9,646,000	-	-	7,400,000	△2,246,000
2022년	9,500,000	-	8,050,000	7,550,000	△1,950,000
2021년	8,000,000	-	-	9,200,000	1,200,000

□ 문 제 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중 ‘자동차세’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징수율이 2021년도에 92.33%, 2022년도에 90.29%, 2023년도에 90.16%로 결산 되었으나,
- 최근 3년간 세입추계(예산액 대비)를 살펴보면, 최초 본예산 세입추계 대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 추계한 금액이 2021년도에는 1,200백만원(15.0%) 과소 편성하였고,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각각 1,950백만원(△20.5%), 2,246백만원(△23.3%)을 과다 추계 편성함.
- 또한, 2022년도 최종예산이 7,550백만원임을 감안하지 않고, 2023년도 본예산에 9,646백만원 과다 추계로 인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금 원금을 회수하여, 그 차액을 충당한 사실이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세수추계 오차를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중 자동차세 추계 시 최근 2년간 과다계상한 바, 차후에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추계 시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람.

조치사항(계획)

【세정과】

- 자동차세(주행분)은 경기상황 및 정부정책(유류세 인하) 등 내·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아 정확히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세목 담당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세입예산 편성 시 과거연도 징수율, 물가상승률 및 정부정책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수를 추계하고자 노력하겠음.
- 본예산 편성 및 추경 예산 편성 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세입을 분석하고 부서 담당자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세입예산 추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2023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4	검사위원	김경수 박근식	소관부서	교통과
제 목	2023회계연도 내 기타회계(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미집행				

개선 및 권고사항																																												
<p>□ 현 황</p> <p>○ 기타회계전출금 미집행 현황(일반회계 → 주차장특별회계)</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부서</th> <th style="width: 10%;">회계</th> <th style="width: 15%;">세부사업명</th> <th style="width: 15%;">통계목</th> <th style="width: 10%;">예산액(A)</th> <th style="width: 10%;">집행액(B)</th> <th style="width: 10%;">미집행액(A-B)</th> </tr> </thead> <tbody> <tr> <td>교통과</td> <td>일반회계</td> <td>내부거래지출</td> <td>기타회계전출금</td> <td style="text-align: right;">3,463,161</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 color: red;">1,963,161</td> </tr> </tbody> </table>		부서	회계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A)	집행액(B)	미집행액(A-B)	교통과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3,463,161	1,500,000	1,963,161																													
부서	회계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A)	집행액(B)	미집행액(A-B)																																						
교통과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3,463,161	1,500,000	1,963,161																																						
<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현황</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3" style="width: 5%;">구분</th> <th colspan="2" style="width: 15%;">세입결산액</th> <th rowspan="3" style="width: 10%;">세출 결산액 (B)</th> <th rowspan="3" style="width: 10%;">결산상 잉여금</th> <th colspan="3" style="width: 20%;">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th> <th rowspan="3" style="width: 5%;">비 고</th> </tr> <tr> <th rowspan="2" style="width: 5%;">수납액</th> <th rowspan="2" style="width: 10%;">미수납액 (전출금)</th> <th colspan="2" style="width: 10%;">이월액</th> <th rowspan="2" style="width: 5%;">순세계 잉여금</th> </tr> <tr> <th style="width: 5%;">명시</th> <th style="width: 5%;">사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right;">7,122,227</td> <td style="text-align: right; background-color: #ffff00;">1,963,161</td> <td style="text-align: right;">4,587,579</td> <td style="text-align: right;">2,534,648</td> <td style="text-align: right;">2,346,706 (1,458,990)</td> <td style="text-align: right;">507,719</td> <td style="text-align: right; background-color: #ffff00;">△319,777</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 비</td> <td style="text-align: right;">4,761,476</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right;">2,023,337</td> <td style="text-align: right;">2,738,139</td> <td style="text-align: right;">2,346,706</td> <td style="text-align: right;">391,432</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군 비</td> <td style="text-align: right;">2,360,751</td> <td style="text-align: right; background-color: #ffff00;">1,963,161</td> <td style="text-align: right;">2,564,242</td> <td style="text-align: right;">△203,491</td> <td style="text-align: right;">(1,458,990)</td> <td style="text-align: right;">116,287</td> <td style="text-align: right; background-color: #ffff00;">△319,777</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5px;">※ ()는 자금없는 이월</p>		구분	세입결산액		세출 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비 고	수납액	미수납액 (전출금)	이월액		순세계 잉여금	명시	사고	계	7,122,227	1,963,161	4,587,579	2,534,648	2,346,706 (1,458,990)	507,719	△319,777		도 비	4,761,476	-	2,023,337	2,738,139	2,346,706	391,432	-		군 비	2,360,751	1,963,161	2,564,242	△203,491	(1,458,990)	116,287	△319,777	
구분	세입결산액		세출 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비 고																															
	수납액						미수납액 (전출금)	이월액			순세계 잉여금																																	
		명시			사고																																							
계	7,122,227	1,963,161	4,587,579	2,534,648	2,346,706 (1,458,990)	507,719	△319,777																																					
도 비	4,761,476	-	2,023,337	2,738,139	2,346,706	391,432	-																																					
군 비	2,360,751	1,963,161	2,564,242	△203,491	(1,458,990)	116,287	△319,777																																					
<p>□ 문 제 점</p> <p>○ 주차장특별회계 자체세입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된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을 3,463백만원을 2023회계연도 내 전액집행하여야 하나, 1,500백만원만 집행하고, 1,963백만원을 미집행함에 따라,</p> <p>○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인 “주차장 조성사업” 1,544백만원 중 군비 1,459백만원이 자금없는 이월로 처리, 세입결산이 예산액 대비 부족하여 순세계잉여금 △320백만원 발생</p>																																												
<p>□ 개선 및 권고사항</p> <p>○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등 자체세입만으로는 주차장 확충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예산편성하고 있으나, 예산 및 회계집행절차 등에 대한 연찬 부족으로 집행하여야 할 예산 등을 미집행하는 사례가 발생</p>																																												

- 예산 및 회계관계법령 및 집행절차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고, 팀장·담당자 인사 이동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는 등 담당자뿐만 아니라 부서장·팀장 등 직 상급자가 관심을 갖고 전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조치사항(계획)

【교통과】

- 주차장특별회계는 자체세입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출금 3,463백만원을 2023회계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1,500백만원만 집행하고 1,963백만원을 미집행함에 따라 위와 같은 예산결산 불부합 사실이 발생하게 되었음.
- 아울러, 예산, 회계 관련법령 및 집행절차에 대한 연찬을 통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 수립 후 즉시 전출금을 집행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예산이 불용 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며, 추후에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이동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는 등 전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음.

2023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5	검사위원	박근식	소관부서	교통과
제 목	2023년도 일반회계 보조금 정산 소홀				

개선 및 권고사항

현 황

○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 총괄표

(단위:천원)

보조금수령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실 집행잔액 (d)=(a)-(b)-(c)	불부합 집행잔액 (e)	차액 (f)=(e)-(d)	비고
339,613,238	293,195,456	29,078,470	17,339,312	17,343,337	4,025	

※ 보조금 집행현황 총괄표 [붙임]

○ 저상버스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천원)

예산현액 (A)	보조금 수령액 (B)	집행액 (C)	이월액 (D)	차액 (E=B-D)	집행잔액	비고
계: 92,000	계: 92,000		계: 92,000	계: 0	계: 4,025	
국: 42,500	국: 46,000		국: 42,500	국: 3,500,	국: 3,500	
도: 6,375	도: 6,900	-	도: 6,375	도: 525	도: 525	
군:43,125	군:39,100		군:43,125	군:△4,025	군: 0	

※ 중형버스(길이 7m이하 : 85,000천원/대 (국42,500 / 도6,375 / 군36,125)

※ 대형버스(길이 8m이상 : 92,000천원/대 (국46,000 / 도6,900 / 군39,100)

문 제 점

○ 당초 교통과에서는 중형 저상버스 1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국도비 보조금을 요구하고, 우리군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였음. 또한, 타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운수업체와 논의 결과 대형 저상버스로 구매 할 것을 요구하여, 경기도에 대형 저상버스 보조금 변경 신청을 요청하였음.

○ 대형 저상버스 보조금 변경 요청이, 경기도로 부터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평균 지방보조금심의를 통해 2회추경에 군비 7,000천원 (중형 → 대형 보조금 간 차액)을 추가 편성하였음.

○ 이후, 경기도에서 대형 저상버스 기준으로 변경 내시 되었으나, 업무담당자 변경으로 3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여 위 현황 같이 군비에서 4,025천원 차액 발생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업무담당자 변경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조치사항(계획)

【교통과】

○ 업무담당자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시 철저를 기하여 보조금 편성 및 정산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겠음.

[붙임] 보조금 집행현황 총괄표

(단위: 원)

구분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		집행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계		계		계		계		계	
합계	계	330,433,021,000	계	339,613,238,940	계	293,195,456,480	계	29,078,470,320	계	17,343,337,140
당해(일반회계)	국비	102,341,278,000	국비	107,482,227,320	국비	101,124,491,338	국비	2,456,716,022	국비	3,901,019,960
	시도비	56,330,557,000	시도비	57,713,754,620	시도비	42,953,227,834	시도비	11,982,211,768	시도비	2,778,315,018
	시군구비	131,941,123,000	시군구비	134,597,194,000	시군구비	114,616,446,478	시군구비	9,598,816,130	시군구비	10,385,956,392
당해(기타특별회계)	국비	18,001,172,000	국비	18,001,172,000	국비	15,916,069,640	국비	1,856,919,040	국비	228,183,320
	시도비	3,687,312,000	시도비	3,687,312,000	시도비	1,338,185,887	시도비	2,346,706,613	시도비	2,419,500
	시군구비	619,023,000	시군구비	619,023,000	시군구비	331,886,793	시군구비	270,520,187	시군구비	16,616,020
당해(공기업특별회계)	국비	1,394,400,000	국비	1,394,400,000	국비	1,394,400,000	국비		국비	
	시도비	4,391,800,000	시도비	4,391,800,000	시도비	4,174,604,830	시도비	216,524,170	시도비	671,000
	시군구비	11,678,456,000	시군구비	11,678,456,000	시군구비	11,327,728,610	시군구비	350,056,390	시군구비	671,000
당해(기금)	시도비	11,160,000	시도비	11,160,000	시도비	6,982,030	시도비		시도비	4,177,970
	시군구비	36,740,000	시군구비	36,740,000	시군구비	11,433,040	시군구비		시군구비	25,306,960
합계	계	34,870,915,360	계	34,167,830,360	계	19,504,116,220	계	13,720,665,010	계	943,049,130
이월(명시)(일반회계)	국비	1,188,952,160	국비	1,188,952,160	국비	920,368,948	국비	58,506,152	국비	210,077,060
	시도비	2,502,188,220	시도비	2,514,238,320	시도비	2,174,392,413	시도비	55,326,302	시도비	284,519,605
	시군구비	2,665,789,160	시군구비	2,693,906,060	시군구비	2,075,050,959	시군구비	341,936,306	시군구비	276,918,795
이월(사고)(일반회계)	국비	228,760,700	국비	228,760,700	국비	214,674,920	국비		국비	14,085,780
	시도비	980,476,480	시도비	980,476,480	시도비	979,460,110	시도비		시도비	1,016,370
	시군구비	416,755,620	시군구비	416,755,620	시군구비	403,418,190	시군구비		시군구비	13,337,430
이월(계속비)(일반회계)	국비	6,674,398,990	국비	6,674,398,990	국비	3,800,198,896	국비	2,874,200,094	국비	

(단위: 원)

구분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		집행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e=a-b-c$)	
	시군구비		시군구비		시군구비		시군구비		시군구비	
이월(계속비)(일반회계)	시군구비	16,443,149,100	시군구비	16,443,149,100	시군구비	7,065,799,594	시군구비	9,375,258,356	시군구비	2,091,150
이월(명시)(기타특별회계)	국비	90,987,000	국비	90,987,000	국비	90,987,000	국비		국비	
	시도비	2,224,951,780	시도비	2,224,951,780	시도비	1,442,087,326	시도비	782,864,454	시도비	
	시군구비	369,194,220	시군구비	369,194,220	시군구비	136,620,874	시군구비	232,573,346	시군구비	
이월(사고)(기타특별회계)	국비	305,311,930	국비	305,311,930	국비	182,598,720	국비		국비	122,713,210
이월(명시)(공기업특별회계)	국비	780,000,000	국비	36,748,000	국비	18,458,270	국비		국비	18,289,730

2023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6	검사위원	박근식	소관부서	교통과
제 목	주차장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소홀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2021~202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지난년도 수입) 징수현황
(단위: 천원)

과목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C)=(A)-(B)	수납액 대비 징수액비율 (%)	미수납액 대비 징수액 비율 (%)	비고
지난년도 수입	2021년	341,782	28,026	313,756	8.2	91.8	
	2022년	362,622	31,871	330,751	8.8	91.2	
	2023년	398,241	34,926	363,315	8.8	91.2	

□ 문 제 점

- 202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중 임시적세외수입(지난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은 398,241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4,926천원으로 8.8%에 불과하고, 미수납액은 363,315천원으로 91.23%에 이르고 있음.
- 미수납액 363,315천원은 2021년~2023년 까지 대부분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누적되어 발생된 체납으로, 3년 동안 평균 징수율이 8.6%는 거의 체납액에 대하여 자동차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게 징수 대책을 실시하지 않은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소관 부서에서는 고액체납자 또는 수차례에 걸쳐 미납 차량에 대하여 「지방행정체제.부과금법」에 따라 관허사업제한, 자동차 압류 처분, 번호판 영치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결손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결손처분)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결손처분 등의 절차 이행을 통해서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 하기 바람.

조치사항(계획)

【교통과】

- 체납액에 대한 미수납 원인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무재산 등 결손처분 요건 충족 시 적극적으로 결손처리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안내 및 납부 독려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음.

2023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7	검사위원	신명철	소관부서	안전재난과, 회계과
제 목	예산의 부적절한 전용				

개선 및 권고사항

현 황

예산전용사례

(단위: 천원)

부서	통계목		전용액	전용일자	전용사유	비고
	당초	전용				
안전재난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공공운영비	1,875	2023-09-25	통계목 착오로 인한 변경	
회계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공운영비	13,000	2023-10-12	공용차량 유류비 부족	

문 제 점

- 예산편성은 사업계획 및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편성 업무 소홀로 잘못 편성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하나 예산전용을 통해 증감 조정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전용이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증감 조정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함.

조치사항(계획)

【안전재난과】

-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하겠으며, 향후 예산전용이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증감조정 후 집행하겠음.

- 전용액에 대하여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경기도 반납.

(안전재난과-20053, 20058, 20060, 20061호)

【회계과】

- 본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반영할 때 예산전용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세출예산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예측가능한 추계기법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전용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음

2023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8	검사위원	신명철	소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재난과, 세정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건설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보안정책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제 목	세입예산 편성 및 징수결정 철저				

개선 및 권고사항				
<p>□ 현 황</p> <p>○ 세입예산목별조서상 예산 미편성 후 징수결정액 현황 (단위: 천원)</p>				
부서명	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비고
18개 부서	20개 과목	-	43,668,182	
감사담당관	공공예금이자수입	-	22	
	그외수입	-	22	
안전재난과	그외수입	-	2,360	
세정과	공공예금이자수입	-	135	
	순세계잉여금	-	43,460,336	
복지정책과	이행강제금	-	10,000	
	기타과태료	-	480	
행복돌봄과	위탁비반환수입	-	3,621	
소상공인지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	21	
문화체육과	기타과태료	-	1,745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	140,179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	19,193	
관광과	기타이자수입	-	394	
건설과	공공예금이자수입	-	95	
환경정책과	변상금	-	18	
자원순환과	그외수입	-	103	
도시과	기타이자수입	-	153	
교통과	부정이익환수금	-	84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	1,309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	16,548	
건축과	기타이자수입	-	20	
허가민원과	위탁비반환수입	-	330	

	그외수입	-	8,933	
보건정책과	불용품매각대금	-	262	
상수도사업소	불용품매각대금	-	1,818	
하수도사업소	공유재산임대료	-	1	

○ 세입예산목별조서상 예산 편성 후 징수결정액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비고
5개 부서	8개 과목	261,470	-	
감사담당관	위탁비반환수입	238	-	
안전재난과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51	-	
일자리정책과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3,346	-	
관광과	하천사용료	101,901	-	
	공공예금이자수입	213	-	
자원순환과	위탁비반환수입	129,418	-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6,769	-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19,534	-	

□ 문 제 점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세입목별조서에는 예산 미편성 후 징수결정액 18개 부서, 20개 과목 43,668,18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편성 후 미징수결정액이 5개부서, 8개 과목 261,470천원이 발생되었음.
- 이는 본예산 편성시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을 예측가능한 방법과 추계기법을 통해 실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중 총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본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예산 수정 및 편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세정과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소관부서와 협조를 통해 누락되는 세입 예산이 없도록 할 것이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 징수결정을 못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조치사항(계획)

【감사담당관】

- 본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을 통하여 세입예산목별조서 상 예산 미편성 후 징수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 위탁비 반환 수입에 대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재부여받아 세입예산목별조서 상 예산편성 후 미징수결정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안전재난과】

- 반납금액 고지서 발급 시 추경 세입예산 반영을 확인하고 인사이동 시 해당사항을 철저히 인계인수하여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음.
-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자반납 51천원을 세출로 편성하여 지출하였으나, 당시 업무 담당자의 회계시스템 업무 미숙지로 인해 세입도 같이 편성함.
- 앞으로 이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하여 향후 회계시스템 업무 숙지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교육하겠음

【세정과】

-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점검하여 2023년 2회 추경 시 세외수입 45억원, 3회 추경 시 3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추경 및 본 예산 대비 세외수입 세수를 추계하며 예산편성 철저를 당부하였으나 업무연찬 부족에 따른 업무미숙으로 세입예산 미편성 또는 착오편성하였음.
- 본예산 및 추경 예산 편성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세입을 분석하고 부서 담당자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세입예산 추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복지정책과】

-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면밀한 세입예산 추계를 통하여 세입예산이 미편성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또한 예측되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조기 편성 하도록 하겠음.

【행복돌봄과】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되는 전년도 반납금인 ‘위탁비반환수입’ 징수결정액에 대하여 세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반영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정책과 4건 총 3,346천원 징수되었으나 편성과목과 부과과목 상이로 인해 미징수로 파악되는 상황이며, 향후 부과 및 징수 시 부과과목을 편성과목과 일치하여 징수처리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 세입예산 편성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2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시 해당 예산과목을 편성하여 세입조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에 편성 누락되지 않도록 세외수입 프로그램 운영 능력 제고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담당자별 세외수입프로그램 활용교육 참여
 - 반환금관련 세외수입 고지시 세입예산 편성 철저 확인

【관광과】

- 향후 세외수입예산 편성 시 누락되는 세입예산이 없도록 편성에 철저를 기하며, 사정 변경 등으로 징수가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과】

- 하반기 예금이자수입은 12월 마지막주에 입금되어 정확한 금액을 미리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누락되는 세입예산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 본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예산 수정 및 편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 2024년 상반기에 ‘위탁비 반환금’ 을 최종 확정 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편성 및 징수결정 할 계획임.

-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기준에 맞게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관련 법령을 연찬하겠음.

【도시과】

- 2023년 상반기 일상경비계좌 이자금액 세외수입 처리시 타 회계과목(공공예금이자수입)과 중복으로 결의한 사항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완료하였음. 향후 이자수입 징수시 회계과목에 유의하여 징수 및 편성토록 하겠음.

【교통과】

- 향후 2회 추경 또는 3회 추경 시 세외수입 현황을 파악하여 세입 예산 편성에 누락되는 세외수입 징수분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건축과】

- 세입예산 편성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2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시 해당 예산과목을 편성하여 세입조치하겠음.

【허가민원과】

- 보조금 집행단체에 대하여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 계획적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
- 마수납 금액인 8,827,790원은 채납 상태로, 세입예산목별조사상 예산 편성 불가 (시기미도래)
- 그외수입 관련, 정산액 및 부적정 지급 회수액에 대하여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예산 수정 및 편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보건정책과】

-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 항목이 누락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겠음.
- 징수결정 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한 번 더 철저히 확인하여 세입예산에 미편성 된 항목이 징수되지 않도록 하겠음

【상수도사업소】

- 본예산 및 추경 편성 시, 각 팀별 업무담당자 연찬을 통해 세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하수도사업소】

- 당시 담당자의 착오로 공기업 특별회계 공유재산 임대료 과목으로 사용료를 부과했어야 하나, 일반회계 공유재산 임대료 과목으로 오부과함. 따라서, 업무 담당자 실수 방지 위하여 직무 교육 실시

2023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9	검사위원	신명철	소관부서	안전재난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산림과, 건설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제 목	이월사업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따른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				

개선 및 권고사항

현 황

○ 이월사업 집행 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계	237,941	117,384	112,903	45,238	12,921	54,744	7,654
일반회계	209,751	101,017	102,712	37,863	10,782	54,067	6,022
주차장 특별회계	7,955	3,591	4,314	3,806	508	-	50
수질개선 특별회계	5,589	3,624	1,690	1,429	261	-	275
상수도 특별회계	14,646	9,152	4,187	2,140	1,370	677	1,307

※ 이월사업 집행잔액(1억원이상) 세부내역 [붙임] 참조

문 제 점

- 이월 사업은 한 회기 동안 완료되지 못한 사업의 사업비를 다음 년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예산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여야 함은 물론 23년 이월사업 집행잔액 또한 7,654백만원으로 과도하게 발생되었음
- 안전재난과 재난경보시설 확충등 17개 사업은 1억이상의 이월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 사례임.

개선 및 권고사항

-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월사업의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월비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이월사업은 행정절차 등 이행 지연, 절대공기 부족, 사업계획 변경, 토지보상 협의지연, 시기 미도래등으로 발생하나 이월사업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사례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조치사항(계획)

【안전재난과】

- 재난경보시설 확충사업 2024년 5월 3일 준공(사고이월 322백만원) 지출

【회계과】

-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월사업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으며, 이월비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음.

【복지정책과】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화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하고자 추진 된 (한시)특별지원 사업임
- 기준중위소득 60%~100%이하 소득활동 중인 청년가구 거주자가 많지 않아, 2023년도에 당초 사업규모 대비 적은 규모에 대하여 청년월세를 지원하였음.
- 향후 사업 수요에 맞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사무소에 사업지침 안내 및 신청 독려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문화체육과】

- 이월사업인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은 상면·청평면 국민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공사(이월액 200백만원), 파크골프장 개선공사(이월액 140백만원), 가평썰매장 시설 정비공사(이월액 100백만원)로 구분되어 있음.
- 상면·청평 국민체육센터 냉·난방기는 24.2월 설치 완료하였고, 파크골프장 개선공사는 2월 착공하여 현재 5월내로 준공검사 완료예정이며, 가평썰매장 시설 정비공사는 6월 공사완료 예정으로 상반기에 이월된 예산 모두 집행 계획임.

【산림과】

- 간선 임도신설 1·2차분 모두 준공 완료하였으나, 현장여건변동에 따라 1차분 감액, 2차분 증액되어 준공 처리하였음.
- 1차분은 도급액 및 관급자재대를 감액 조치한 후 준공금 지출 완료하였으며, 2차분의 선금 제외한 준공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1차분의 감액분을 2차분의 도급액으로 충당하여 지출해야 하나, 신속집행 일환으로 관급자재 선고지를 의뢰한 1차분의 관급자재 환불이 조달청 회계연도 마감으로 부득이하게 2차분의 도급액으로 충당할 수 없게됨.
- 따라서, 본 예산의 원인행위 가능액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관급자재업체에서 환불받은 관급자재대 16천만원 중 9백만원을 예산팀 협조하여 2025년 제1회 추경에 교부받아 사고이월 예산과 함께 잔액 164백만원 전액 지출하고자 함.
- 관내 주요 등산로에 대하여 개주산 외 1개 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024. 7. 4. 준공 완료함

【건설과】

-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시 감액편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환경정책과】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이월사업 예산 112백만원은 전기버스 1대 지원예산으로 전기버스 1대 출고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으나, 2024년 5월 전액 집행 완료함.
- 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자원순환과】

- 현재 2023년도 이월액 381백만원 중 381백만원 모두 지출되었으며, 향후이월 사업이 발생할 경우, 이월사업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 차후에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도시과】

- 2040 가평 군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수행 중 시가화예정용지 추가 확보를 위하여 2035 가평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선 시행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예비비로 낙찰율에 따른 잔액을 이월 하였으나, 상위계획의 변경 및 관련 지침 변경 등으로 본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필요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항으로 향후 계약 차액은 집행이 예상되는 항목에 한하여 이월토록 하겠음.
-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3-40호선 개설공사 및 현리도시계획도로 소로2-67호선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군관리계획(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시행하여 보상금 등 이월액 지급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상수도사업소】

-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사무관리비 외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수선유지비, 신설공사비 등의 세출예산 편성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수선유지비 2,125백만원, 신설공사비 1,355백만원 편성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각종 공사 등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이월은 불가피하나, 이월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여내 집행가능 예산편성 및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도록 하겠음.

[붙임] 이월사업 집행잔액(1억원이상)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부서명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재난경보시설확충	1,440	754	322		322		364	안전재난과
청사등 공유건물 관리	3,187	2,326	496	487	9		365	회계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76	19	12	12			145	복지정책과
공공체육시설 정비	2,392	1,735	508	448	60		149	문화체육과
임도시설	1,586	972	460	460			154	산림과
관내 주요등산로 정비사업	1,000	512	387	200	187		101	
도로정비	1,084	565	415		415		104	건설과
도로정비	1,686	720	741	741			225	
도로정비	3,316	2,010	757	600	157		549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684	2,132	112		112		1,440	환경정책과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운영	822	296	381		381		145	자원순환과
2040가평 군기본계획재수립	577	422			422		155	도시과
가평도시계획도로소로 2-81호선	600	281	185		185		134	
현리도시계획도로소로 2-67	542	62	22	22			458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1,723	1,446	79			79	198	
주민지원사업	1,587	1,073	305	200	105		209	환경정책과
기본경비	4,020	2,062	408		408		1,550	상수도사업소

2023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0	검사위원	신명철	소관부서	문화체육과, 관광과, 건설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평생교육사업소
제 목	주요사업 적극 추진				

개선 및 권고사항

현황

○ 2023회계연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진도율						사업기간내 미완료사업		비고
		완료(100%)		50%이상		50%미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1	448,088	7	35,029	18	189,688	13	208,620	3	14,571	

○ 2023회계연도 완료 목표 미완료 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비고
부서	건	사업비	
2개 부서	3건	14,571	
문화체육과	2	7,720	
관광과	1	6,851	

○ 2024·2025회계연도 완료 목표 50%미만 사업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비고
부서	건	사업비	
6개 부서	9건	81,629	
문화체육과	1	12,800	
관광과	1	16,000	
건설과	4	19,729	
환경정책과	1	2,200	
자원순환과	1	7,900	
평생교육사업소	1	23,000	

※ 세부내역 [붙임] 첨부

□ 문 제 점

-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시설 사업 20억이상, 용역 3억이상인 사업으로 다년간에 걸쳐 공기에 맞게 41개사업 4천4백80억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완료목표 사업 중 7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3개 사업은 완료되지 못하였고, 진도 50%이상 사업 18건, 50%미만의 사업 13건으로 사업 기간등 판단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으나 2024·2025회계연도 완료목표 사업 중 9건이 50% 미만으로 추진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못한 3건 중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23. 12. 31.까지 임에도 진도율이 60%로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주요사업 추진은 가평균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편익증진 등 가평균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 사업계획 수립단계와 예산편성시부터 정밀한 검토와 책정된 사업은 적극 추진하여 사업의 부진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는 비효율적 예산운영 사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추진이 필요함.

조치사항(계획)

【문화체육과】

- 가평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개선사업의 본 공사는 완료(23.6월)되었으나, 도민체육대회 대비 막구조물 설계, 긴급보수공사 등으로 올해 예산집행을 완료할 계획임.
- 상면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23.11월 준공되었으나, 시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후 준공 정산 완료 예정임.
- 설악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약7개월 간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24년 9월 준공목표(현 공정률 53%)로 공사 진행중 임.

【관광과】

-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2024. 7. 10.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사전 인·허가 협의 지난으로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24년 1월 협의 및 승인이 완료되어 사업이 발주됨에 따라 2025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과】

- 예기치 않은 민원발생, 토지보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나, 주요사업이 기한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 보납산-늪산 생태통로 연결사업은 인근 레일바이크 운영에 따른 업무협의를 및 보납산 기초 저판 형식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음.
-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기간을 연장하여 2025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평군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024년 8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중임.
-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2025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6월 실착공 예정으로 실착공 후 공사진척에 따라 노무비, 기성금 지급 등으로 예산집행에 탄력을 가할 것이며,
- 목표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공정관리에 최선을 기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세부내역

【2023회계연도 완료 목표 미완료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종합진도(%)	부서	비고
		시작	완료			
3건	14,571					
가평종합 운동장 체육시설 개선	4,620	2019-01-01	2023-06-30	90	문화체육과	
상면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3,100	2019-06-01	2023-06-30	95	문화체육과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	6,851	2020-01-01	2023-12-31	60	관광과	

【2024·2025회계연도 완료 목표 50%미만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종합진도(%)	부서	비고
		시작	완료			
9건	81,629					
설악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	12,800	2021-01-01	2024-06-30	35	문화체육과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16,000	2019-09-01	2024-12-31	40	관광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129	2017-01-01	2024-12-31	40	건설과	
농어촌도로(북101호선)확포장 공사	6,600	2018-01-01	2025-12-31	15		
소하천정비(앵상골 천)	4,400	2019-01-01	2024-12-31	40		
소하천정비(발전소 천)	4,600	2020-01-01	2025-12-31	20		
보납산 -늪산 생태통로 연결사업	2,200	2022-10-01	2024-12-31	10	환경정책과	
가평군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	7,900	2022-04-01	2025-12-31	10	자원순환과	
평생학습관 건립	23,000	2020-01-01	2025-11-30	43	평생교육사업소	

2023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1	검사위원	유근웅	소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재난과, 행복돌봄과, 소상공인지원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도시과
제 목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0%미만 사업 중 1억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0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
7개 부서	10개 사업	9,469,557	5,284,002	1,694,433	65,082	2,426,040	
기획예산 담당관	법무 및 소송행정지원	427,600	279,186	-	-	148,414	65
안전재난과	사회복무요원관리	411,544	238,130	-	-	173,414	58
행복돌봄과	결식아동급식지원	667,240	450,314	-	65,082	151,844	67
소상공인 지원과	소상공인지원사업	1,926,003	1,297,233	-	-	628,771	67
관광과	관광자원시설 운영관리	3,839,181	2,242,224	1,487,611	-	109,345	58
농업정책과	농가소득 배가육성	244,200	101,862	-	-	142,338	42
도시과	설악·청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551,911	286,154	-	-	265,757	52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 2-81호선 개설공사	600,000	280,685	184,822	-	134,493	47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 3-40호선 개설공사	260,000	46,495	-	-	213,505	18
	현리도시계획도로 소로 2-67호선 개설공사	541,878	61,719	22,000	-	458,159	11

□ 문제점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70%미만 사업 중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은 7개부서 10개 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중 보조사업 1건, 자체사업이 9건임. 이를 사유별로 보면 행정여건변화(소송비용, 인건비, 지원사업, 농업재해 등)에 대한 대응 부적절이 6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집행일부구간 축소 및 공사 불가 2건, 군관리계획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이 2건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행정여건 변화에 대한 예측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현장여건, 보상협의, 군관리계획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제반여건들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소관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성격, 소요기간, 실현가능성 및 인구여건, 기후변화, 지역사회변화 추이 등 대·내외적 제반여건과 사회현상을 고려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적정한 필요예산을 본예산 내지 추경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발생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불용액 내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조치사항(계획)

【기획예산담당관】

- 2024년 제3회 추경에 집행 불가한 예산을 감액처리를 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음.
- 2025년 본예산에 최소액만 편성 완료하였으며,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음.

【안전재난과】

- 가평군 관내 사회복지무요원 소집대상자원 부족 등 사회현상 고려 예산 편성 예정
- 2024년 예산편성시 예상 편성액 대비 75% 편성
- 2025년 예산편성시 예상 편성액 대비 50% 편성 예정
- 추가 증액 필요시 추경에 반영 후 예산 편성하여 집행잔액 최소화 예정

【행복돌봄과】

- 결식아동급식지원 도비사업에 대한 예산 사업량 대비 신청 인원 파악등 사업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경기도에 예산 변경을 적극 요청하는 등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

【소상공인지원과】

- 동절기 기록적인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난방비를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지급제외 대상업소 수 파악 등의 어려움이 있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향후 사업신청 시, 정확한 추계에 의한 사업비 채정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관광과】

- 향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근무 일수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예산편성하겠으며, 시설비 등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향후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농업정책과】

- 재난지원금은 다른 예산과 달리 재해가 발생할 즉시 집행이 가능하여야 하는 예산으로 이상기온에 따른 자연 재난과 농민들의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피해 발생 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필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임.

- 다만, 과도한 예산 확보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 금액을 편성하여 불용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재난 대비 홍보 책자 제작 배포,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예방 방법 및 신고 요령 등을 홍보하여 피해 최소화에도 노력하겠음.

- 이상기온에 따른 농업인 안전 및 농기계 사고에 대비한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지원 예산을 자체적으로 23년도 100백만원 편성하였으나 24년도 사업 진행시 30백만원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5년도 예산 편성시 적정 금액인 50백만원을 편성하여 당해 예산을 소진할 계획임.

【도시과】

-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추진 등 행정절차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불가 시 추가경정 편성시 감액편성 하겠음.

2023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2	검사위원	유근웅	소관부서	민원지적과
제 목	개발부담금 예산액 대비 과다징수결정 및 미수납액 과다 발생				

개선 및 권고사항																				
<p>□ 현 황</p> <p>○ 2023회계연도 부담금 결산내역 (단위: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2.5%;">부서명</th> <th style="width: 12.5%;">과목</th> <th style="width: 12.5%;">예산현액</th> <th style="width: 12.5%;">징수결정액</th> <th style="width: 12.5%;">수납액</th> <th style="width: 12.5%;">미수납액</th> <th style="width: 12.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민원지적과</td> <td>부담금</td> <td>150,000</td> <td>759,429</td> <td>249,501</td> <td>509,928</td> <td></td> </tr> </tbody> </table>							부서명	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민원지적과	부담금	150,000	759,429	249,501	509,928	
부서명	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민원지적과	부담금	150,000	759,429	249,501	509,928															
<p>□ 문 제 점</p> <p>○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개발이익의 환수)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세외수입 과목임.</p> <p>○ 동과목은 납부기한의 장기간(6개월) 및 3~5년 범위에서 년단위 분할 납부로 인하여 매년 징수결정액의 변동률이 큰 과목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에 대한 세수추계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함.</p>																				
<p>□ 개선 및 권고사항</p> <p>○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세입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세입예산을 추계함에 있어 세입과목에 맞는 예측가능한 추계기법을 개발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p> <p>○ 납기시기 미도래 사유로 발생한 미수납액 발생과 관련하여 징수결정 및 분할 납부 허가 시기 등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기 바람.</p>																				

조치사항(계획)						
<p>【민원지적과】</p> <p>○ 개발부담금 세입예산액은 납부기한 장기화(6개월)로 현년도 부담금이 다음 년도 세입편입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부담금의 분할납부(3년~5년, 매년 1회 납부) 등 세입추계를 정확히 예측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p>						

- 본예산 세입예산 편성 시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등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세수를 추계토록 노력하였으며, 세입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시 세입 예산을 290,000천원으로 반영하였음.
- 또한,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6개월인 상황에서, 납부기한 한 달 전에 납부 재안내(공문 및 유선통화)를 실시하여 납기미도래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 미수납액(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게 공문시행, 전화, 방문 독촉과 재산 압류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체납액 회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음.

2023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3	검사위원	유근웅	소관부서	환경정책과
제 목	2023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비 집행률 제고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2023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환경정책과	3,684,000	2,132,064	112,000	704,966	734,970	

- 최근 5년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계획	780	11,991	31	382	51	1,253	171	2,954	266	3,718	261	3,684	
실적	564	8,501	29	350	44	878	151	2,388	195	2,773	145	2,132	
집행률	70.9		91.6		70		80		74.6		57.9		

□ 문 제 점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정부(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으로 중장기 전기차 보급목표(2030년/420만대)달성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과도하게 예산을 증액·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 충전인프라 부족, 고가의 가격 등으로 인해 구매욕구가 저하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소관부서에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중앙부처(환경부)에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가 전기자동차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공공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기자동차 구매욕구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집행률을 제고시키기 바람.

조치사항(계획)

【환경정책과】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집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전기자동차 사업물량 조정 건의를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음.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현실적 집행률을 고려하여 2025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집행 추이를 모니터링 후 추가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지역 언론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에게 동 사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기여 및 보조 지원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통해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2023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4	검사위원	이호신	소관부서	세정과
제 목	지방 세입금 환급 과다 발생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지방 세입금 환급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환급액	사 유 별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 경정	법인 정산	기타
일반 회계	2,825,173	23,290	351,458	15,838	71,784	560,249	188,627	1,140,693

□ 문 제 점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위 환급 사유별 중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사유로의 환급은 대부분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의 착오, 과실 등으로 발생되어 행정의 공신력 실추가 우려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세입금 환급액이 전년도 1,804,998천원에서 2023년도에는 2,825,17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환급액 1,020,175천원 증가되었으나, 이중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한 환급액은 전년도 대비 282,821천원 증가됨.
- 따라서 세금부과는 납세의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로 지방세 부과시 철저한 검토를 하여 세입금 환급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바람.
- 또한, 2023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중 세입금 환급 현황 사유별(기타)에 보조금(473,234천원)이 누락되어 계수 불일치로 서류 작성시 주의를 요함.

조치사항(계획)

【세정과】

- 지방세 환급 건의 발생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겠음. 증가추이를 관찰하여 각 세목 담당자들이 환급현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유하겠음.
- 지방세 환급의 사유 중 특히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로 인한 환급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각 세목별 담당자들과 업무능력 전문성을 제고하겠음. 지방세정 업무연찬과 실무지식 공유를 통해 불필요한 환급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작성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2023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5	검사위원	이호신	소관부서	도시과
제 목	옥외광고정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 부적정				

개선 및 권고사항					
<input type="checkbox"/> 현 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금조성 현황 (2023년도)					
- 총 괄 (단위: 천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옥외광고 정비기금	555,515	21,609	71,656	50,047	577,124
- 전입금 및 예탁금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전 입 금	예 탁 금			
옥외광고정비기금	20,000	20,000		일반회계 전입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회계 및 기금사업 예산현황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일반회계	옥외광고 정비기금	비고		
계	76,000	30,000			
현수막지정게시대 군정이미지 및 표시번호 정비	-	30,000			
주인없는 간판 및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6,000	-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정비 및 보수	20,000	-			
전신주 부착 방지시트 설치	20,000	-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작 및 설치	15,000	-			
통합안내간판 군정슬로건 제작 및 설치	15,000	-			

□ 문제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1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 2023년도 기금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20,000천원을 해당 목적사업에 투입하지않고, 20,000천원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적립하였으며,
- 또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사업 예산을 보면, 기금예산에서는 1개 사업에 30,000천원만 사용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주인없는 간판 및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등 5개 사업 76,000천원을 편성 지출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기금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사업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 향후, 구체적인 계획없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전입금을 전액 적립하는 일이 없도록 기금운용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또한, 2016년 1월 6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는 ‘조례명’과 일부개정된 법률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바, 조속히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을 권고함.

조치사항(계획)

【도시과】

- 금년도 예탁금에 대한 활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기금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액 적립하는 일이 없도록 기금운용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겠음.